



2016년
가평군 재정공시

2016. 8



가 평 군
Gapyeong County

■ 목 차

재정공시 제도란?	3
2016- 가평군 지방재정 공시	4
공통공시	6
공통공시 총괄	7
결산규모	9
재정여건	15
부채/채무/채권	18
행정운영경비	34
복지/민간지원	48
기금/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69
재정성과/평가	78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96
특수공시	113
용어해설	122

1 개념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1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 등 8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특수공시사항 예시

-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
-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 현안사업 추진실적 등

2016년 가평군 재정공시(결산)

2016. 8.

가평군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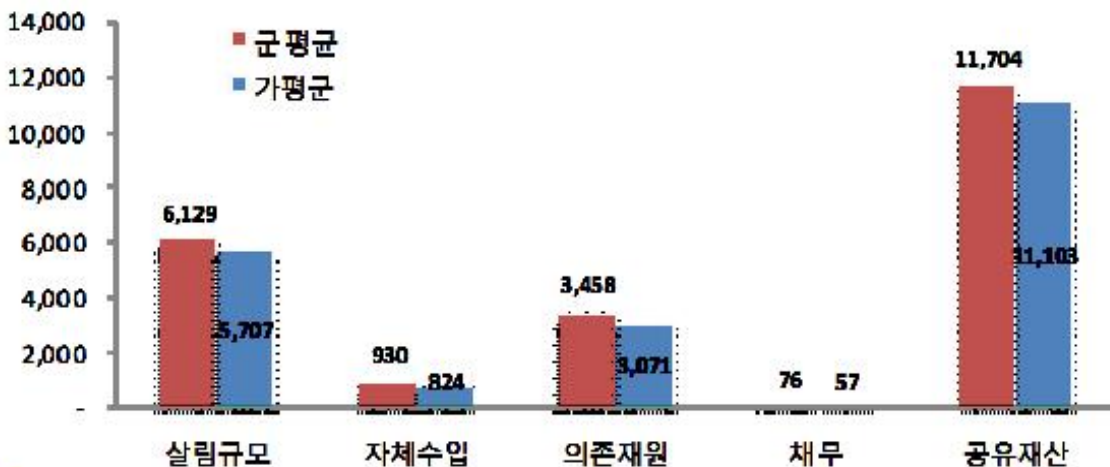


- ◆ 우리 군의 2015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707억원으로, 전년대비 5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2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1만원입니다.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71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12억원입니다.

- ◆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5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9만 2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5년도에 공작물 등 19,491건 (4,84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건물 등 48건(2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1,103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우리군은 군(4)유형에 속함)
 -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유사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단위: 억원)



- ◆ 우리 군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129억원) 보다 422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30억원)보다 106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458억원)보다 387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6억원)보다 19억원 적고, 가평균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만 5천원)보다 2만 3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1,704억원)과 비교하여 601억원이 적습니다.

- ◆ 우리 군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9.57%이며 (전국 평균 51.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1.53% (전국 평균 76.3%)입니다.

- ◆ 우리 군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4억원의 흑자입니다.

- ◆ 지난해,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살림규모, 자체수입의 규모가 작은 편이고, 채무액 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또한 자립도와 자주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전반적인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살림규모가 536억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p.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주민의견 제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길웅(031 580 2054)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가평균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5,707	5,171	536	6,129	5,795	334
	세출결산	4,427	3,893	534	4,722	4,421	301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29.57	28.42	1.15	27.09	24.94	2.15
	재정자주도[최종]	71.53	74.2	△2.67	65.3	64.89	0.41
	통합재정수지[최종]	74	80	△6	78	70	8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91	203	△12	409	425	△16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2	18	△6	188	109	78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57	122	△65	76	109	△3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채정부담 현황	0	0	0	24	14	1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6	4	2
	채권 현황	39	39	0	55	63	△8
	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17	17	△0	28	27
자치단체 청사 관리 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403	400	4	497	472	25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	4	1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 경비 집행 현황		4	3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9	11	△2	9	10	△1
연말지출 비율		224	164	61	192	187	6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현황		132	126	6	110	103	7
금고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가평균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	사 회 복 지 비	857	749	108	980	852	12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13	482	31	498	510	△12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 가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 사 축 제 경 비	19	43	△24	18	15	2
⑦ 기금/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기 금	457	425	33	217	220	△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11,103	6,284	4,820	11,704	10,944	760
	물 품 현 재 액	112	112	△	82	134	△52
	출 자 · 출 연 금 집 행 현 황	13	2	11	26	19	7
	출 자 · 출 연 기 관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공 기 업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무 제 표	자 산 총 계 17,079 15,916 1,162 22,859 22,069 791 부 채 총 계 191 203 △12 409 425 △16 수 익 총 계 3,523 3,346 177 4,297 4,162 134 비 용 총 계 2,789 2,708 81 3,474 3,192 282					
⑧ 재정성과/평가	재 정 분 석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세 지 출 현 황	99	96	3	98	96	2
	성 인 지 결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 사 · 축 제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 사 신 축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 의 계 약 현 황	17	23	△6	69	62	7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 수 · 처 리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징수 실적	443	413	30	583	551	32
	조 기 집 행 실 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 부 감 사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 간 투 자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유사 지자체 평균액은 지자체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 1년 동안 우리 가평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가평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0,727	445,507	75,088	28,054	22,077

-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430,322	466,471	473,546	517,131	570,727

- ▶ 결산 총계기준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37%의 세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은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등의 증가로 10.4%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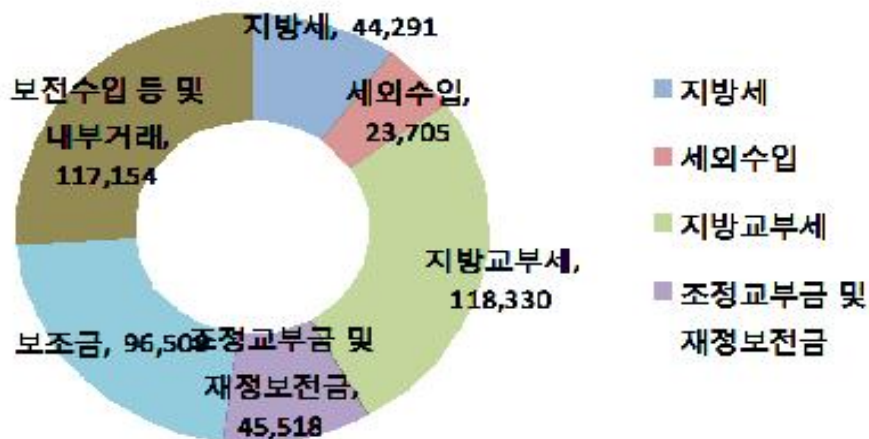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1,502	100%	377,640	100%	372,316	100%	407,004	100%	445,507	100%
지 방 세	38,343	10.91%	39,020	10.33%	37,744	10.14%	41,262	10.14%	44,291	9.94%
세외수입	91,201	25.95%	118,523	31.39%	98,533	26.46%	21,144	5.19%	23,705	5.32%
지방교부세	94,351	26.84%	113,530	30.06%	123,713	33.23%	123,712	30.40%	118,330	26.5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7,598	7.85%	24,846	6.58%	20,150	5.41%	39,734	9.76%	45,518	10.22%
보 조 금	100,009	28.45%	81,720	21.64%	86,174	23.15%	81,748	20.09%	96,509	21.66%
지 방 채	0	0.00%	0	0.00%	6,000	1.61%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0	0.00%	99,404	24.42%	117,154	26.30%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15년도는 전년대비 지방세, 재정보조금 등 전체적인 세입재원은 늘었지만, 지방교부세는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38,343,354	39,020,033	37,744,449	41,261,858	44,291,313
인구수(명)	59,358	60,794	61,017	61,213	62,00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46	642	619	674	714

☞ 15년도 주민1인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714천원으로 전년도 674천원에 비해 40천원 늘어났습니다.

2-2. 세출결산

■ 1년 동안 우리 가평균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42,665	333,373	64,803	22,411	22,077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13,987	362,747	357,177	389,265	442,665

▶ 결산 총계기준

☞ 지역발전, 복지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증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9.2%의 세출이 증가하였고, 2015년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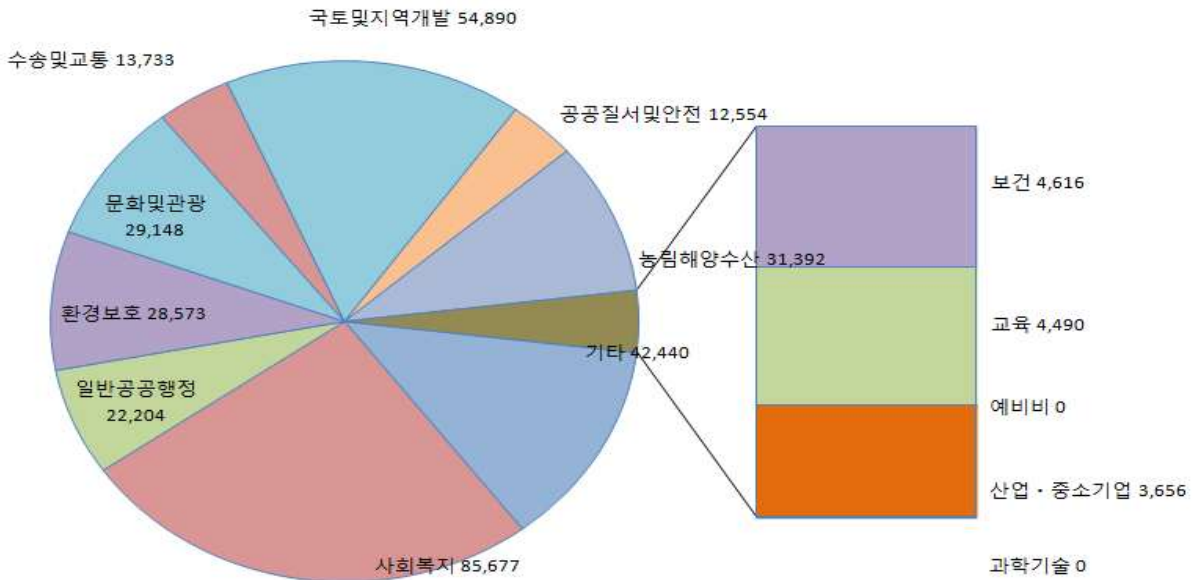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4,066	100%	299,101	100%	278,039	100%	295,190	100%	333,373	100%		
일반공공행정	18,781	7.39%	21,392	7.15%	28,657	10.31%	19,308	6.54%	22,204	6.66%		
공공질서·안전	2,976	1.17%	6,996	2.34%	4,961	1.78%	10,213	3.46%	12,554	3.77%		
교육	3,961	1.56%	4,412	1.48%	5,076	1.83%	4,363	1.48%	4,490	1.35%		
문화 및 관광	20,104	7.91%	23,757	7.94%	28,417	10.22%	26,600	9.01%	29,148	8.74%		
환경 보호	21,614	8.51%	16,044	5.36%	16,582	5.96%	14,929	5.06%	28,573	8.57%		
사회 복지	56,584	22.27%	61,199	20.46%	62,969	22.65%	74,870	25.36%	85,677	25.70%		
보건	4,163	1.64%	4,158	1.39%	4,215	1.52%	4,673	1.58%	4,616	1.38%		
농림해양수산	34,424	13.55%	35,443	11.85%	29,918	10.76%	28,396	9.62%	31,392	9.42%		
산업·중소기업	2,629	1.03%	4,746	1.59%	2,404	0.86%	2,428	0.82%	3,656	1.10%		
수송 및 교통	17,388	6.84%	30,243	10.11%	22,106	7.95%	20,457	6.93%	13,733	4.12%		
국토·지역개발	37,278	14.67%	53,952	18.04%	34,295	12.33%	47,139	15.97%	54,890	16.4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타	34,164	13.45%	36,759	12.29%	38,438	13.82%	41,815	14.17%	42,440	12.7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3,334억원으로, 사회복지(25.70%), 국토·지역개발(16.46%)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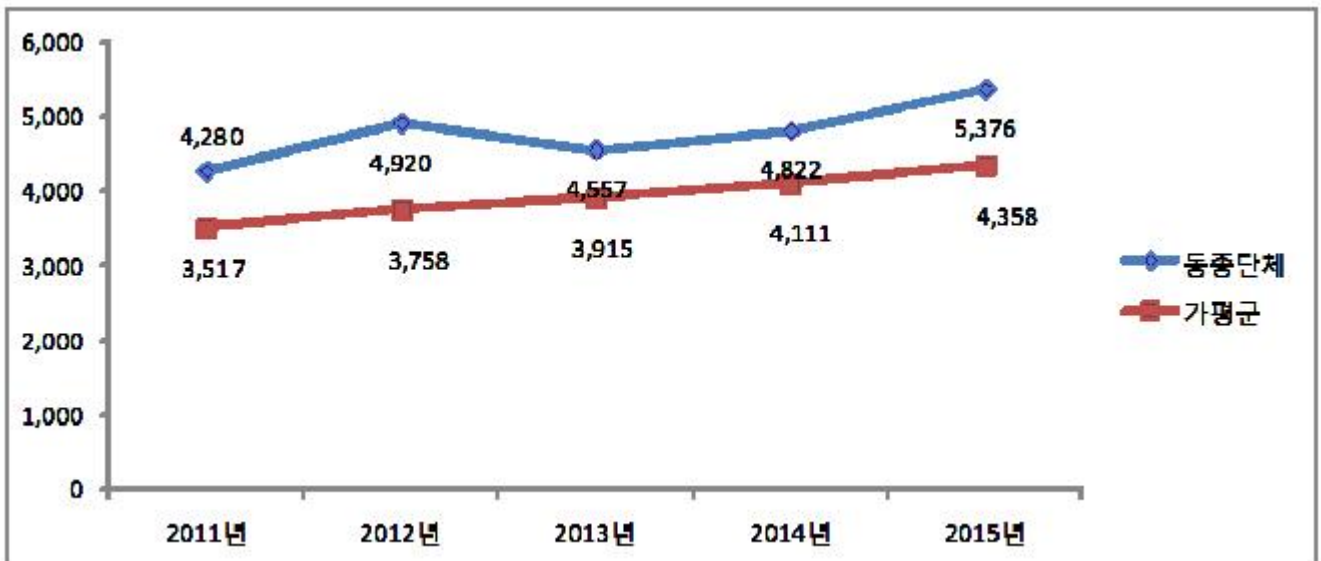
❖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54,066,232	299,100,987	278,039,011	295,190,170	333,373,475
인구수(명)	59,358	60,794	61,017	61,213	62,008
주민 1인당 세출액	4,280	4,920	4,557	4,822	5,376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 '15년 우리군의 주민1인당 세출규모는 537만원으로 유사단체(435만원)보다 많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2%입니다.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 가평균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 (A)	세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	528,462	399,099	129,363	1,712,242	19,266	1.10%
자치단체(a)	1	526,076	398,014	128,062	1,707,859	19,051	1.10%
지방공공기관(b)	3	8,897	7,596	1,301	5,423	215	4.00%
내부거래(A+B)		6,511	6,511	0	1,040	0	0.00%

❖ 가평균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내부거래A (A)
세정규모 활용지표	■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60%	8.00%	40.00%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54.90%	52.20%	48.00%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20%	1.20%	0.40%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20%	0.20%	0.20%	0.00%
	세입결산액 계	528,462	526,076	8,898	6,512
	자체수입	83,110	80,724	7,425	5,039
	세출결산액 계	399,099	398,014	7,596	6,511
	인건비결산액	45,668	42,105	3,563	0
	행사관련경비	4,687	4,657	30	0
	업무추진비	704	692	12	0
세정상태 활용지표	■ 부채/자산	1.10%	1.10%	4.00%	0.00%
	■ 부채/환금자산	12.60%	12.60%	15.50%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4.00%	4.10%	0.00%	0.00%
	자산	1,712,242	1,707,859	5,423	1,040
	부채	19,266	19,051	215	0
	환금자산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확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52,630	151,241	1,389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41,976	140,684	1,292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5,700	5,700	0	0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가평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9.5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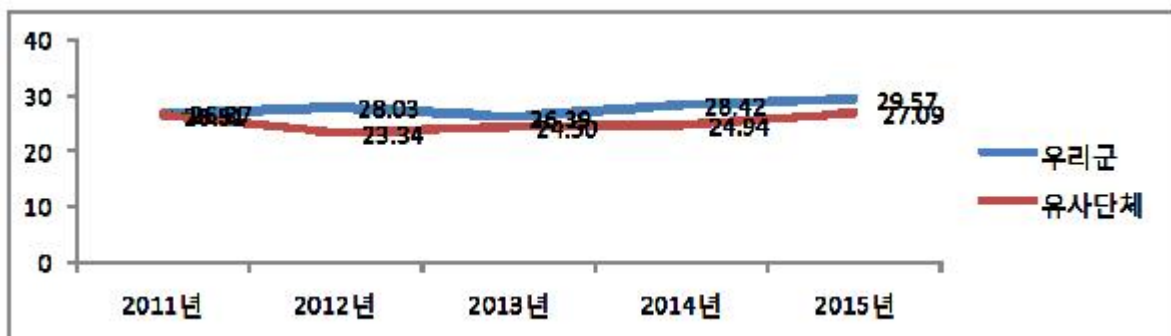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9.57% (16.27%)	378,871 (378,871)	112,028 (61,642)	261,843 (261,843)	5,000 (0)	0 (55,386)

-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26.51%	28.03%	26.39%	28.42%	29.5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최근 5년간 우리군의 연평균 재정자립도 증가율은 2.91%로 유사단체(0.56%)에 비해 큰 편이며, '15년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8.6%로 증가했습니다.

3-2. 재정자주도[최종]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가평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1.5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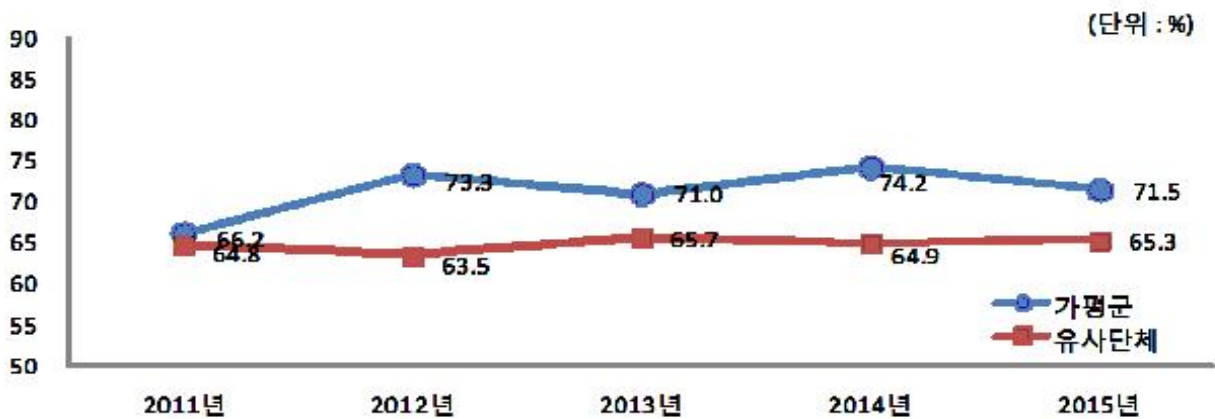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1.53% (58.23%)	378,871 (378,871)	271,010 (220,624)	102,861 (102,861)	5,000 (0)	0 (55,386)

-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66.20%	73.31%	70.99%	74.20%	71.5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15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54억원이 감소하여, 재정자주도는 2.67% 감소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최종]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가평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83,118	435,979	100	1,880	1,780	62,016	437,759	-54,641	7,375
일반회계	323,485	347,710	0	1,700	1,700	49,222	349,410	-25,925	23,297
기타 특별회계	19,633	14,424	50	160	110	3,390	14,534	5,099	8,489
공기업 특별회계	39,733	72,830	0	0	0	9,405	72,830	-33,097	-23,692
기 금	266	1,015	50	20	-30	0	985	-718	-718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37,305	-37,954	-41,574	-36,347	-54,641
통합재정수지 2	-1,895	3,432	4,198	8,021	7,375

☞ 우리군의 2014년도 통합재정규모는 4,377억원이며, 통합재정수지1은 546억 적자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73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가평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1,590,926	1,711,192	120,266
통합부채	20,399	19,266	-1,133
유동부채	7,890	10,744	2,854
장기차입부채	9,216	5,000	-4,216
기타비유동부채	3,293	3,522	229

- ▶ '15년 결산 순계기준
- ▶ 우리 가평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1,591,640	1,707,859	116,219	
부채(B)	20,273	19,051	-1,22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27	1.12	-0.1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4, 2015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리 가평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361,956	1,776	0.49	387,965	1,167	0.3
직영 기업	소 계	361,630	1,650	0.46	387,619	1,021	0.26
	가평균 상수도	113,545	1,590	1.42	100,431	914	0.92
	가평균 하수도	248,085	60	0.02	287,188	107	0.04
공사 공단	소 계	326	126	63	346	146	73
	가평균 시설관리공단	326	126	63	346	146	73

※ 2014년, 2015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직영기업에 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세외세출외현금 미정산 반환금, 공공요금 등 자동이체 및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퇴직급여 총당부채 등으로 인한 부채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리 가평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4,033	1,379	51.96	4,033	138	3.54
출자 기관	소 계	4,033	1,379	51.96	4,033	138	3.54
	자나라인(주)	4,033	1,379	51.96	4,033	138	3.54
출연 기관	소 계	-	-	-	-	-	-
	가평군 복지재단	-	-	-	-	-	-

4-5. 우발부채 현황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이하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 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이	하		해	당	없	음
○○시(도)								
지 방 공 사· 공 단	○○공단							
	⋮							
출 자· 출 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이하		해	당	없	음
○○시(도)							
지 방 공 사· 공 단	○○공단						
	⋮						
출 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 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이	하		해	당	없	음
○○시(도)								
지 방 공 사· 공 단	○○공단							
	⋮							
출 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이	하		해	당	없	음
○○시(도)								
지 방 공 사· 공 단	○○공단							
	⋮							
출 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4-6.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가평균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2,223	-6,523	0	6,523	5,700	
일 반 회 계	11,140	-5,740	0	5,740	5,400	
특 별 회 계	소 계	1,083	-783	0	783	300
	공기업특별회계	1,083	-783	0	783	3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 지방채무는 2015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5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가평균의 '15년도 지방채무는 57억원으로 '14년도에 비해 6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가평균의 현안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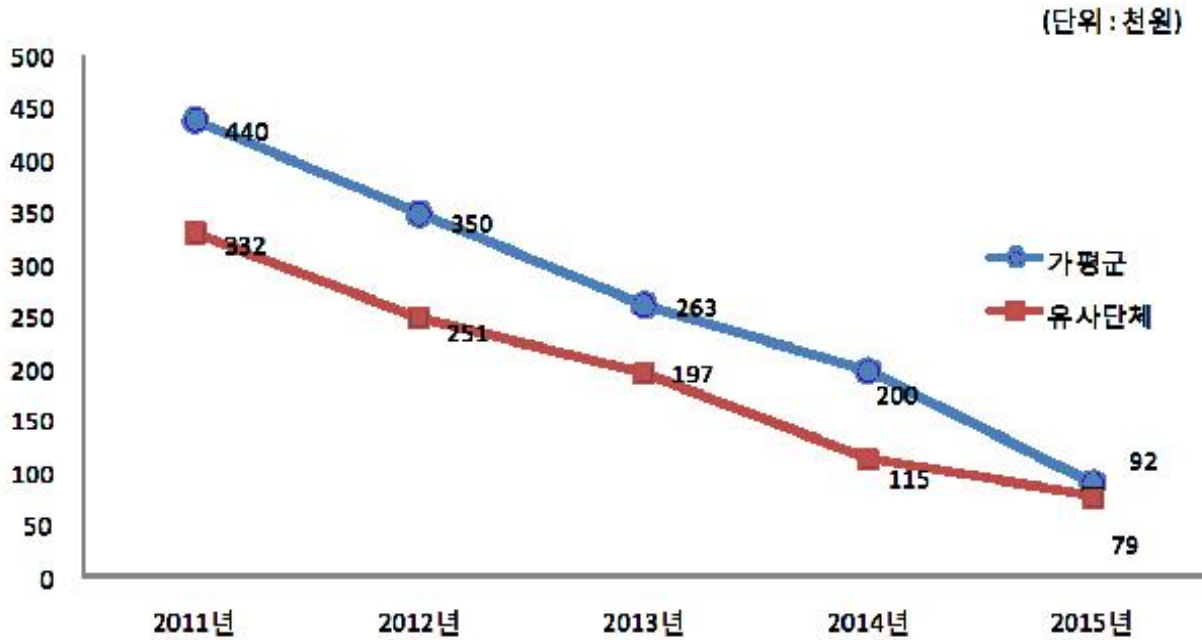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26,128	21,270	16,070	12,223	5,700
인구수	59,358	60,794	61,017	61,213	62,008
주민 1인당채무(천원)	440	350	263	200	92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재정건전성 노력을 통해 '15년도에 65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여 주민 1인당 채무가 현저히 감소됨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5,100	15,200	7,800	9,000	9,4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비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이하	해당	없음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평균이 민자 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이하		해당없음	
BTL 임대료 및 운영비				
BTO 재정지원금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이	하		해	당	없	음
BTL 사업	◇◇◇ 사업							
	◇◇◇ 사업							
	:							
BTO 사업	◇◇◇ 사업							
	◇◇◇ 사업							
	: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 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가평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이	하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기금						
	○○○기금						

❖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3,987	362,747	347,305	378,109	430,043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이하		해	당	없	음
1							
2							
.							
.							

4-12. 채권 현황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가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중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856	8	349	342	3,863	
일 반 회 계	2,989	121	201	80	3,110	
특별회계	소 계	551	9	109	204	456
	공기업특별회계	1	0	0	0	1
	기타 특별회계	550	9	109	204	455
기금회계	소 계	315	-18	39	57	297
	사회복지기금	315	-18	39	57	297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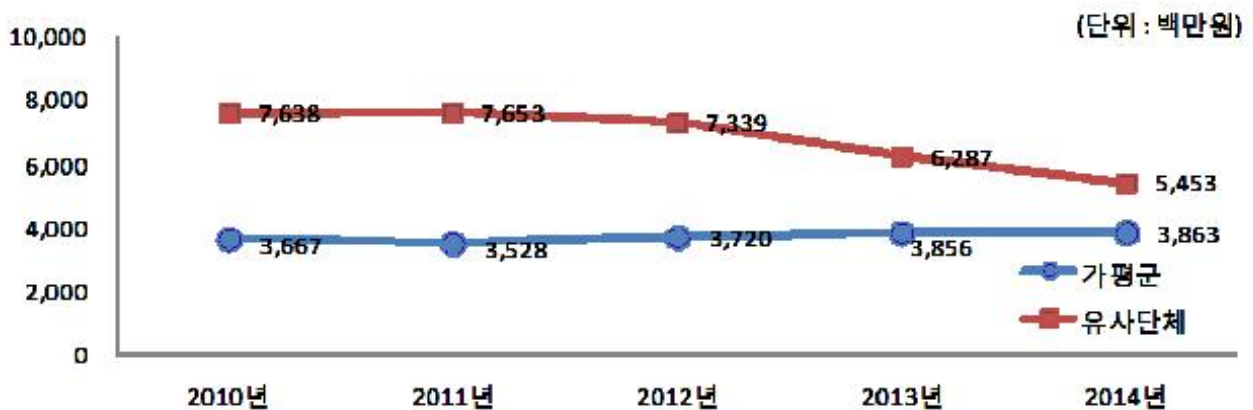
❖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3,667	3,528	3,720	3,856	3,86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이 '15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화선예치금, 공무원학자대여금, 지역개발, 주택융자 등 39억원이며 유사단체보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가평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3,373	1,668	0.50%	
일반운영비		881	0.26%	
여 비		501	0.15%	
업무추진비		265	0.08%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21	0.0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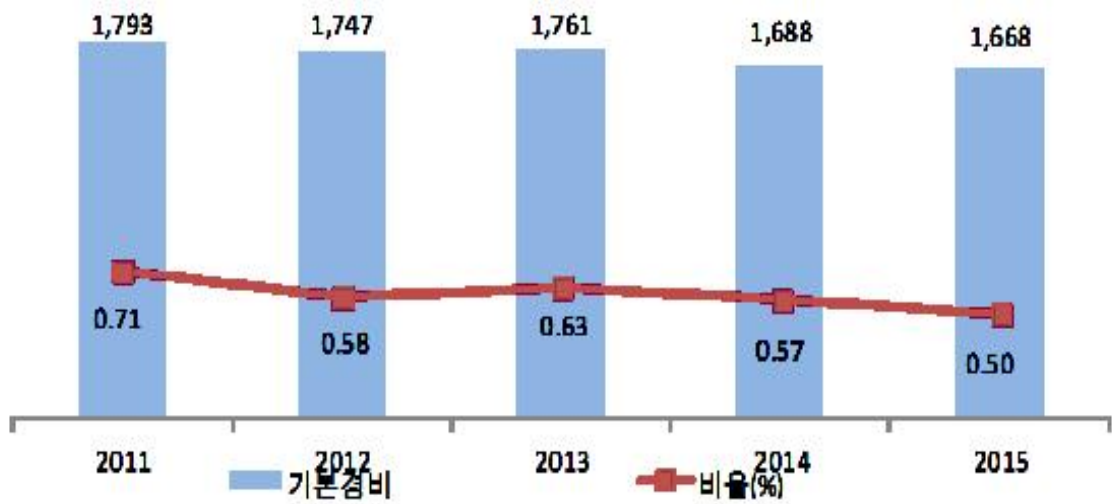
❖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54,066	299,101	278,039	295,190	333,373
기본경비	1,793	1,747	1,761	1,688	1,668
비율	0.71%	0.58%	0.63%	0.57%	0.50%

-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 및 비율은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큰 변동이 없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우리 가평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16m²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 m², 백만원)

가평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가평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952m ²	4,468m ²	△516m ²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가평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33,373	40,324	12.10%	
인건비(101)	333,373	31,732	9.52%	
직무수행경비(204)		893	0.27%	
포상금(303)		1,290	0.39%	
연금부담금 등 (304)		6,409	1.92%	

-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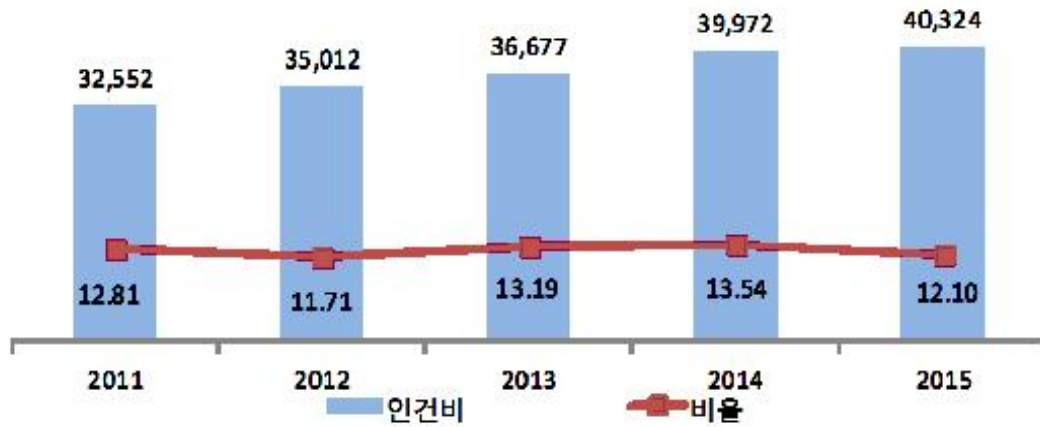
❖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54,066	299,101	278,039	295,190	333,373
인건비(B)	32,552	35,012	36,677	39,972	40,324
인건비비율(B/A)	12.81%	11.71%	13.19%	13.54%	12.10%

-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 ☞ 공무원 현원증가,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인상 등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0.9%상승하였으며, 전체 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54%에서 12.10%로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가평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3,373	487	0.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33,373	134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53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54,066	299,101	278,039	295,190	333,373
업무추진비	344	347	360	400	487
비율	0.14%	0.12%	0.13%	0.14%	0.1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매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에 따라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와 비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큰 변동이 없으나, 2014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5.1.14 ~ 1.23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선진지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3	직원
2015.2.11 ~ 2.18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발전 성공사례 벤치마킹	이탈리아	5	16.1	부단체장 및 직원
2015.2.9 ~ 2.16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해외 문화시찰	이탈리아	3	8.7	단체장 및 직원
2015.2.24 ~ 2.28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 국외연수(의전수행)	캄보디아	1	1.4	직원
2015.3.11 ~ 3.18	농정시책추진 우수시·군 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1	3.7	직원
2015.3.22 ~ 3.29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3.4	직원
2015.4.6 ~ 4.10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단 국외연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1	1.5	직원
2015.4.14 ~ 4.22	청렴, 반부패 정책 벤치마킹	스위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1	4.3	직원
2015.4.22 ~ 4.29	'14년 체납정리 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8.5	직원
2015.5.8 ~ 5.18	선진재즈페스티벌 국외연수	스페인, 프랑스	1	16.7	직원
2015.5.13 ~ 5.16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일본	10	14	단체장 및 직원
2015.5.18 ~ 5.21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일본	9	12.5	직원
2015.5.27 ~ 6. 4	'14년 세외수입 운영평가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1	4.6	직원
2015.5.27 ~ 6. 3	선진지 감사기법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4.6	직원
2015.5.27 ~ 6. 3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선진가족 복지정책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8	직원
2015.6.3 ~ 6. 11	'15년 경기행정발전협의회 해외 사례조사	호주, 뉴질랜드	1	4	직원
2015.6.2 ~ 6. 5	해외 지역개발 정책사례 해외연수	일본	1	2	직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5.6.6 ~ 6. 13	유럽 대도시 먹거리 정책 해외연수	영국,이탈리아	2	4.2	직원
2015.6.16 ~ 6. 20	지방자치교육 해외교육 국외연 수(향부속)	일본	4	6.1	직원
2015.7.22 ~ 8. 13	제18기 청소년 국제교류 인솔	캐나다	3	6.2	직원
2015.7.23 ~ 7. 26	'15년 찾아가는 워크숍 (축제질적향상 도모)	일본	1	1.1	직원
2015.7.21 ~ 7. 29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해외사례 조사	미국	10.2	2	직원
2015.8.7 ~ 8. 11	지방자치교육 해외교육 국외연 수(향부속)	일본	1	1.5	직원
2015.8.25 ~ 9. 3	제14기 핵심리더과정 정책 국외연수	영국,프랑스, 독일	2	11	직원
2015.8.26 ~ 9. 3	택시정책 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	네델란드, 프랑스	1	4.5	직원
2015.8.31 ~ 9. 5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단 해외연수 의전수행	미국	1	2.6	직원
2015.9. 2 ~ 9. 6	우수농업인단체회원 해외연수	일본	2	3.5	직원
2015.8.31 ~ 9. 7	'15년 국외통일교육 아카데미 (중국반)	중국	1	2.1	직원
2015.8.30 ~ 9. 8	'15년 유럽 유통시스템 벤치마킹	프랑스,벨기에, 네델란드,독일	9	3.7	직원
2015.9.8 ~ 9. 12	민원행정분야 선진지 국외연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1	1.5	직원
2015.10.14 ~ 10. 27	자매도시 미국 시더시와 미제40사단 초청 방문	미국	4	35.2	단체장 및 직원
2015.10.5 ~ 10. 9	제14기 핵심리더과정 항일독립 운동 지역탐방 해외리더	러시아	2	3.3	직원
2015.10.11 ~10. 19	'15년 전국도서관 직원 해외연수	덴마크,스웨덴, 노르웨이	1	3.3	직원
2015.11. 2 ~ 11. 5	경기동부권시군의회 공무원 지역 탐방 해외연수	일본	1	1.4	직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5.11.9 ~ 11.13	귀농·귀촌 성공사례 및 활성화 정책 벤치마킹	일본	2	1.5	직원
2015.11.13 ~ 11.16	민선6기 경기동부권협의회 해외 선진지 견학	일본	3	0	직원
2015.11.10 ~ 11.13	자치설계단 사기양양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일본	10	15.5	직원
2015.11.23 ~ 11.27	'14년 세외수입 운영평가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6	9.9	직원
2015.11.23 ~ 11.28	DMZ사과단지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중국, 일본	1	2.6	직원
2015.12.7 ~ 12.15	경기북부 종합발전정책 해외 사례 연수	미국	1	5.8	직원
2015.12.1 ~ 12.8	의료급여 유공자 해외연수	스위스, 이탈리아	1	1.5	직원
2015.12.9 ~ 12.18	'15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표창자 선진지 견학	미국, 멕시코	1	5.2	직원
2015.12.7 ~ 12.10	중국 신이시 초청 가평군대표단 방문(자매결연)	중국	1	7.2	단체장 및 직원
2015.12.14 ~ 12.21	복지·여성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국외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1	3.5	직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가평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33,373	361	0.11%	7	5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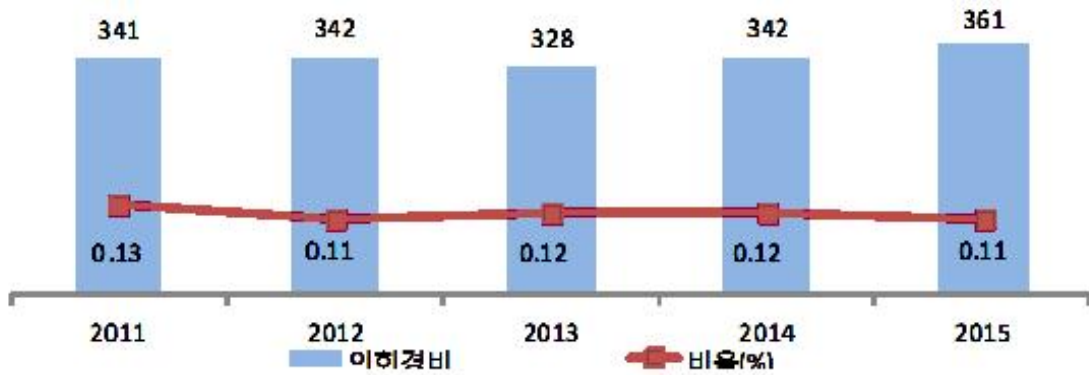
-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 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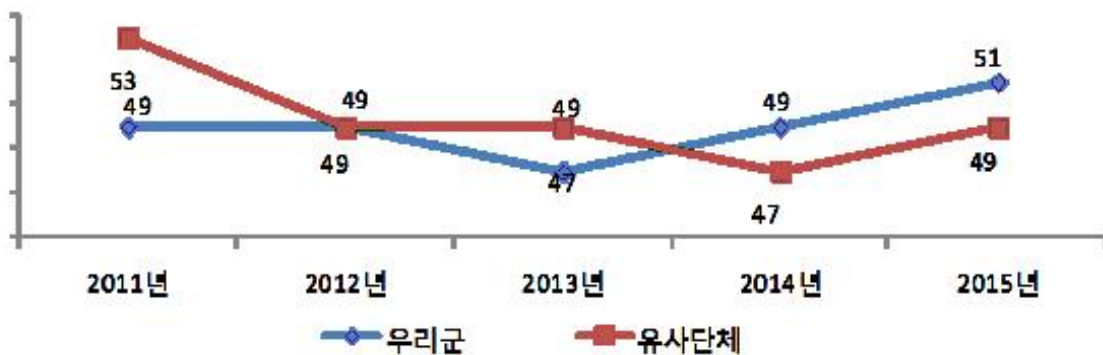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54,066	299,101	278,039	295,190	333,373
의회경비	341	342	328	342	361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1%	0.12%	0.12%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678	48,839	46,791	48,799	51,51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 연도별 의회경비와 의원1인당 의회경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15년도 우리군 소속 지방의원 1명이 집행한 경비는 51백만원으로 유사단체보다 2백만원이 높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8	7	2,6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5.3.3~3.6.	가평жат 세계화를 위한 국외연수	일본	1(0)	1,381,980
2015.5.8~5.18	선진 재즈페스티벌 벤치마킹	스페인, 프랑스	2(0)	11,473,340
2015.5.13~5.16	재래시장 및 농산물 마케팅분야	일본	2(1)	2,890,170
2015.7.15~7.17	가평жат 그린오션 육성사업단	중국	1(0)	934,900
2015.9.8~9.12	민원행정분야 해외산업시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1(0)	1,519,61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 2015년 우리 가평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31	333,373	902	0.27	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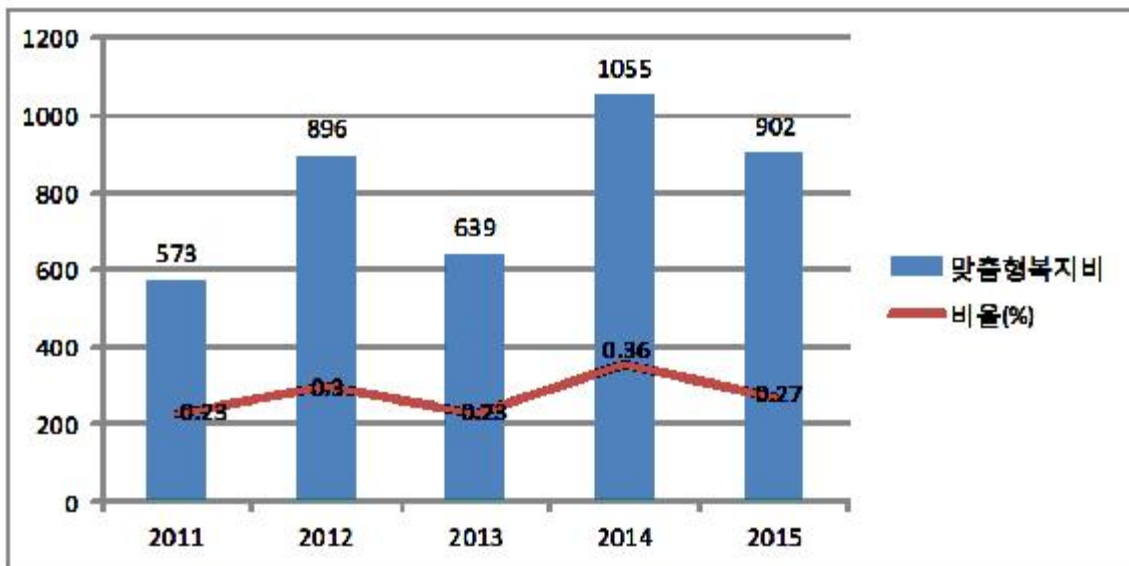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729	773	760	791	831
세출결산액 (B)	254,066	299,101	278,039	295,190	333,373
맞춤형 복지비 (C)	573	896	639	1,055	902
비율(C/B)	0.23	0.3	0.23	0.36	0.27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86	1,159	840	1,334	1,085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15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맞춤형 복지비가 15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1인당 1,08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 우리 가평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5,544	22,421	23.47%
시설비 (401-01)	94,174	22,168	23.54%
감리비 (401-02)	1,051	64	6.13%
시설부대비 (401-03)	184	36	19.3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35	153	113.78%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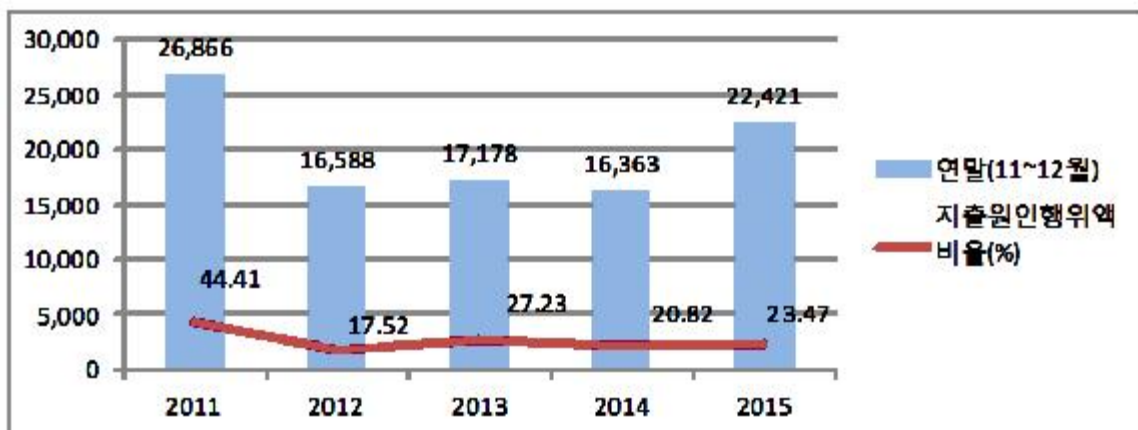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60,499	94,705	63,086	78,584	95,54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6,866	16,588	17,178	16,363	22,421
비율(B/A)	44.41%	17.52%	27.23%	20.82%	23.4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 2014년도에는 크게 감소한 연말지출비율이 2015년도에 다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가평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2,587	13,213	626
지방세	6,849	6,862	13
세외수입	5,737	6,351	6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주요 체납내역 및 징수전망 등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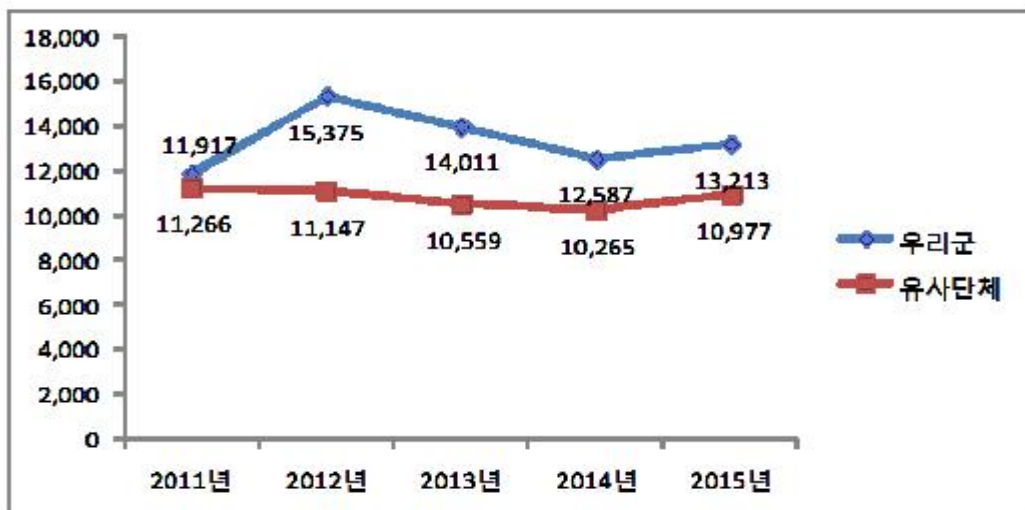
❖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11,917	15,375	14,011	12,587	13,213
지방세	7,209	8,951	7,734	6,849	6,862
세외수입	4,709	6,425	6,277	5,737	6,351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13년부터 매년 감소하던 체납액이 '1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올해는 62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군이 유사단체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600	150	150	150
제1금고	농협은행 가평군지부	'15.01.01~ '18.12.31.	600	150 (당초)	150	150 (‘15.5월)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 ·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이하		해	당	없	음		

-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비고란 작성 예시) ① 000 지원사업(000주관 000행사에 00용도의 경비 지원, 000단체 등에 00용도의 경비지원, 000재단에 000용도로 출연 등), ② 000 설치·제작·조성사업 (000기념 000조형물 제작, 000를 위한 시설물 설치, 000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등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가평군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5,678	11,080	22,910	14,342	33,516	721	955	0	2,152
국 비	44,743	8,717	12,054	5,747	18,133	92	0	0	0
시·도비	10,735	1,025	2,070	4,784	2,698	57	99	0	0
시·군·구비	30,200	1,338	8,786	3,811	12,685	572	856	0	2,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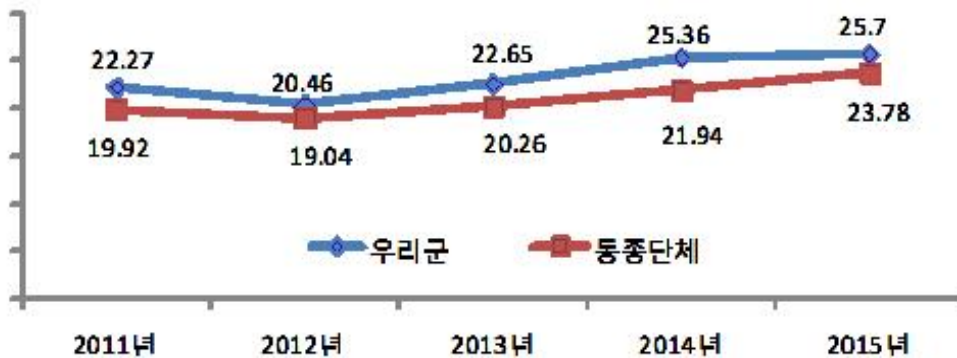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54,066	299,101	278,039	295,190	333,373
사회복지분야(B)	56,584	61,199	62,969	74,870	85,677
사회복지분야비율(B/A)	22.27	20.46	22.65	25.36	25.7
인구수(C)	59,358	60,794	61,017	61,213	62,00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53	1,007	1,032	1,223	1,38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높은 노인인구 비율, 대규모 사회복지 시설인 가평꽃동네, 상신요양원지원 등으로 우리군의 사회복지비 비율이 유사단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33,373	51,314	15.39%	
민간경상보조 (307-02)		3,634	1.09%	
사회단체보조 (307-03)		577	0.17%	
민간행사보조 (307-04)		2,727	0.8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4,828	1.45%	
사회복지보조 (307-10)		24,592	7.38%	
민간자본보조 (402-01)		14,957	4.49%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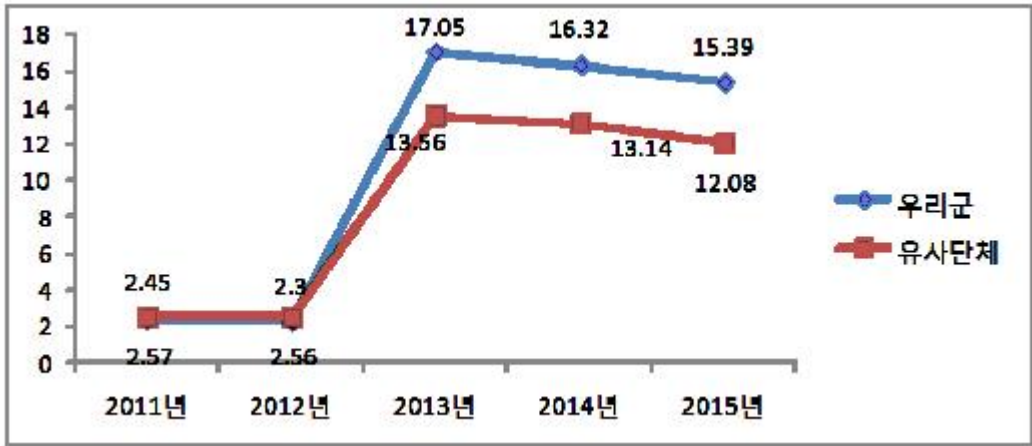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54,066	299,101	278,039	295,190	333,373
지방보조금(민간)	6,230	6,888	47,406	48,170	51,314
비율	2.45%	2.30%	17.05%	16.32%	15.39%

※ '11 ~ '14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 '13년 이후로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게 나타난 사유는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평균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스포츠교실 운영(볼링)	(사)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가평군지회	1	1		우수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참가	(사)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가평군지회	1.6	1.4	0.2	우수
흰지팡이의 날 및 점자의 날 가평대회 참가	(사)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가평군지회	1	1		우수
교통사고방지 사진전시회	(사)한국교통 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 가평군지회	1	1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어르신 공동 생활가정 카네이션하우스	가평군노인복 지관	10	10		우수
사회복지종사 자 처우개선	가평군지역사회 보장협의체	10	10		우수
적십자 긴급구호품 운송 차량 지원	대한적십자사 가평지구협의회	30	30	-	우수
경기도 장애인 축제한마당 참가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경기도 협회 가평군 지회	2	2	-	우수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 운영비 지원	(사)한국교통 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 가평군지회	33	33		우수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 운영비 지원	(사)경기도장 애인복지회 가평군지부	33	33		우수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 운영비 지원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가평군지회	33	33		우수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 운영비 지원	(사)경기도시 각장애인연합 회 가평군지회	33	33		우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가평군지회 운영	대한민국상이 군경회가평군 지회	14	14		우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평군지회 보훈사업	대한민국상이 군경회가평군 지회	1	1		우수
대한민국전몰 군경 미망인회 가평군지회 운영	대한민국전몰 군경미망인회 가평군지회	10	10		우수
대한민국전몰 군경 미망인회 가평군지회 보훈사업	대한민국전몰 군경미망인회 가평군지회	5	5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가평군지회 운영	대한민국전몰 군경유족회가 평군지회	10	10		우수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가평군지회 보훈사업	대한민국전몰 군경유족회가 평군지회	5	5		우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가평군지회 운영	대한민국무공 수훈자회가평 군지회	15	15		우수
대한민국 월남참전 유공자회가평 군지회 보훈사업	대한민국월남 참전유공자회 가평군지회	2	2		우수
대한민국 월남참전 유공자회 가평군지회 운영	대한민국월남 참전유공자회 가평군지회	7	7		우수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가평군지회 운영	대한민국고엽 제전우회가평 군지회	15	15		우수
6.25참전 유공자회 가평군지회 보훈사업	대한민국6.25 참전유공자회 가평군지회	7	7		우수
6.25참전 유공자회 가평군지회 운영	대한민국6.25 참전유공자회 가평군지회	8	8		우수
국가보훈단체 사무활동지원	가평군보훈단 체협의회	13	13		우수
고령국가유공 자돌봄사업	대한민국고엽 제전우회가평 군지회	5	5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현충일 추념행사	가평군보훈단 체협의회	10	10		우수
용문산전투가 평지구참전행사	가평군보훈단 체협의회	6	6		우수
국가유공자의집 문패달아주기	가평군보훈단 체협의회	2	2		우수
가평의병 3.1만세운동 기념행사	가평군보훈단 체협의회	5	5		우수
뺑소니사고방지 차량번호판달 아주기	(사)한국교통 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 가평군지회	1	1		우수
장애인 텃밭 가꾸기	(사)한국교통 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 가평군지회	1	1	0.1	우수
경기도 장애인 어울림 휠체어 마라톤대회 출전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가평군지회	1	1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군비)	지역아동센터	18	18		우수
경기도 장애인 게이트볼대 회 출전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가평군지회	3	1.5	1.5	매우미흡
교통사고방지 순회캠페인	(사)한국교통 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 가평군지회	2	2	0.3	우수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가평군지회	0.3	0.3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80	80		우수
보육시설 냉방비 지원	가평어린이집 외 36개소	19	19		우수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가평어린이집 외 36개소	20	20		우수
보육시설 안전점검비 지원	가평군어린이집연합회	2	2		우수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운영비	가평푸드뱅크	10	10		우수
점자교실 운영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가평군지회	2	2		우수
지역사회복지 지원(사회복지의 날 행사)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10		우수
보육시설 영유아간식비 및 입소료 지원	가평어린이집 외 36개소	192	192		우수
컴퓨터 정보화 교육운영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가평군지회	2	2		우수
국공립보육 시설 차량운영 인건비지원	북면어린이집 외 1개소	7	7		우수
보행교육 훈련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가평군지회	2	2		우수
경로당 활성화 회계교육	대한노인회가 평군지회	9	9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경로당활성화 일자리사업	대한노인회가 평균지회	103	103		매우우수
분회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대한노인회가 평균지회	103	103		매우우수
경로당 무료급식	미등록 경로당	7	7		매우우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대한노인회가 평균지회	15	15		매우우수
경로당 운동기구 비치 지원	경로당	24	24		매우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 지원	가평군어린이 집연합회	8	8		매우우수
보육교사 장기근속 근무수당 지원	가평어린이집 외 36개소	24	24		매우우수
양성평등주 간행사 개최 지원	가평군여성단 체협의회	12	12		매우우수
여성지도자 연찬회 개최 지원	가평군여성단 체협의회	6	6		매우우수
여성단체협 의회 운영	가평군여성단 체협의회	5	5		매우우수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가평군 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 터	22	22		매우우수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 구입비	(사)한국교통 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 가평군지회	45	45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장비 지원	무한돌봄센터 보듬네트워크 팀	10	10		매우우수
경로당 운영난방비 추가 지원	추가 등록 경로당	11	11		매우우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	추가 등록 경로당	9	9		매우우수
경로당 냉방비 추가 지원	추가 등록 경로당	1	1		매우우수
노인교실 운영	대한노인회가 평균지회	55	55		매우우수
노인복지관 생애재교육 사업	가평군노인복 지관	42	40	2	매우우수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새마을회	1,082	1,082		매우우수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새마을회	297	297		매우우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가평군어린이 집연합회	13	13	-	매우우수
노인여가복 지시설 관리자 지원	대한노인회가 평균지회	20	20		매우우수
대한노인회 운영	대한노인회가 평균지회	15	15		매우우수
대한노인회 차량 유지관리	대한노인회가 평균지회	5	5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노인취업센터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가 평균지회	5	5		매우우수
노인의날 행사	대한노인회가 평균지회	19	19		매우우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가평군노인복 지관	17	17		매우우수
경로당 화재보 험료 지원	대한노인회가 평균지회	22	22		매우우수
노인돌보미 활 동비 지원	가평군노인복 지관	11	11		매우우수
새마을지도자 직무교육	(사)가평군 새마을회	23	20	3	우수
통일안보 향토문화 유적지 탐방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평 군협의회	8	7	1	우수
통일 강연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평 군협의회	2.5	2.5	0	우수
사무실 운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평 군협의회	6.5	6.5	0	우수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 원센터 지원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 원센터	10	10	0	우수
읍면 바르게살 기운동협의회 활동지원	바르게살기운 동가평군협의 회	24.6	18.6	6	우수
바르게살기운 동 활성화 전 문지식인 초청 강연	바르게살기운 동가평군협의 회	2.4	2	0.4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사무실 집기류 구입	바르게살기운 동가평균협의 회	2.474	2	0.474	우수
바르게살기운 동가평균협의 회 운영 지원	바르게살기운 동가평균협의 회	33.48	32.28	1.2	우수
6·25 기념행사 지원	가평군 재향군 인회	13.54	12	1.54	우수
새해신년 인사회	가평청년회의소	3	3	0	우수
자율방법대 방 범장비 구입 지원	민간자율 방법대	6	6	0	매우우수
민족통일 전국 대회 참가	민족통일가평 군협의회	1.74	15	0.24	우수
통일문예 작품 시상식	민족통일가평 군협의회	1.6	1.6	0	우수
광복절 맞이 태극기 달아주 기	민족통일가평 군협의회	1.79	1.5	0.29	우수
나라사랑 무궁화 식재 및 관리	민족통일가평 군협의회	2.29	2	0.29	우수
향군그린운동	가평군재향군 인회	2.5	2	0.5	우수
청소년군부대 병영체험	가평군재향군 인회	4.8	4	0.8	우수
영연방 참전국 기념행사	가평군재향군 인회	3.6	3	0.6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영연방 참전국 기념행사	가평군재향군 인회	3.6	3	0.6	우수
1일아들,머느 리되어드리기	(사)가평군 새마을회	5.36	5	0.36	우수
독거노인 효도잔치	(사)가평군 새마을회	3.3	3	0.3	우수
새마을 국민교육	(사)가평군 새마을회	7.5	7.5	0	우수
읍면 새마을협 의회 지원	(사)가평군 새마을회	14.4	14.4	0	우수
새마을사랑의 김장담그기	(사)가평군 새마을회	19.2	19.2	0	우수
태극기 보급사업	(사)가평군 새마을회	10	10	0	우수
자전거 도로변 꽃갈기꾸기 사업	(사)가평군 새마을회	5.1	5.1	0	우수
가평군새마을 회 운영지원	(사)가평군 새마을회	62.545	36	26.545	우수
북한강 맑은물 지키기 및 수 난구조활동	해병대전우회 가평군지부	3.678	3	0.678	우수
야간 자율학습 학생수송	해병대전우회 상조충분회	3.3	2	1.3	우수
전국자유수호 옹변가평군 예 선대회	한국자유총연 맹 가평군지회	2.5	2.25	0.25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학교폭력순찰 포순이봉사단 운영	한국자유총연 맹 가평군지회	2.1	1.9	0.2	우수
자유총연맹 사 무실운영비	한국자유총연 맹 가평군지회	19	12	7	우수
민원행정 상담소 운영	지방행정동우 회	2.88	2.4	0.48	우수
산지정화 및 산불조심 캠페인	지방행정동우회	4.08	3.4	0.68	우수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	지방행정동우회	1.08	0.9	0.18	우수
충효교육	가평향교	3.3	2.8	0.5	우수
석전제 봉행	가평향교	2.3	1.9	0.4	우수
성년례	가평향교	1.6	1.2	0.4	우수
예총 인건비	한국예총가평지부	15	15		우수
예총 운영비	한국예총가평지부	15	15		우수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한국예총가평지부	35	35		우수
가평미협 정기전	한국미술협회 가평지부	8.8	8	0.8	우수
가평문화지 발간	한국문민협회 가평지부	8.8	8	0.8	우수
관현악콩쿠르	한국음악협회 가평지부	8.8	8	0.8	우수
블루 앤 살버 연극축제 개최	한국연극협회 가평지부	8.8	8	0.8	우수
스마트폰 사진 공 모전 개최	한국사진작가 가평지부	8.8	8	0.8	우수
가무악 콘서트	청평문화예술학교	10	8	2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희망콘서트	(사)한국생활음악협회 가평지부	15	15		우수
가평이리랑 블루 및 실버축제	가평이리랑 연구보존회	15	15		우수
관동문화제 개최	가평군불교사임연합회	25.4	20	5.4	우수
가평문화원 사무국 운영비 지원	가평문화원	90.7	88.8	1.8	우수
종합전시회 개최	가평문화원	7	7		우수
문화백일장	가평문화원	10	10		우수
제향·제례 개최	가평문화원	2	2		우수
국내 문화유적 탐방	가평문화원	3	3		우수
문화교실 운영 및 발표회	가평문화원	16	16		우수
제5회 석봉 한호 선생 잔주회대회	가평문화원	30	30		우수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가평문화원	51.5	51.5		우수
가토 나온 예술	(사)한국생활음악협회 가평지부	19	19		우수
생활체육 차량 지원	가평군생활체육회	5	5	-	우수
종목별 연합회 육성	가평군생활체육회	68	68	-	우수
우수종목육성	가평군생활체육회	18	18	-	우수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가평군생활체육회	118	118	-	우수
도단위생활체육 대회 출전	가평군생활체육회	72	72	-	우수
생활체육사무 국운영	가평군생활체육회	118	118	-	우수
생활체육 지도 자 지원	가평군생활체육회	28	28	-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가평군생활체육회	61	61	-	우수
게이트볼연합 회 순회대회	가평군생활체육회	3	3	-	우수
대통령기사이 클대회	대한사이클연맹	80	80	-	우수
가평자라섬 마라톤대회	한국마라톤협회	146	70	76	우수
문체부장관배 전국합기도대회	가평군합기도 연합회	49	30	19	우수
가평캡디틀리그 유소년축구대회	유소년축구교 육원	123	120	3	우수
경기도협회장 기 검도대회	가평군검도협 회	42	20	22	우수
푸른연인배 테니스대회	가평군테니스 연합회	41	20	21	우수
전국대학스포 츠동아리대회	대한체육인협회	65	50	15	우수
연인산전국 산악자전거대회	대한자전거연맹	55	40	15	우수
양준혁전국 초등학교야구대회	양준혁야구재단	60	30	30	우수
전국학교스포 츠클럽티볼대회	뉴스포츠협회	75	15	60	우수
경기도학생 테니스대회	가평군테니스 연합회	20	10	10	우수
재즈센터 프로그램 및 정기공연	(사)자라섬청 소년재즈센터	72	72	-	매우우수
자라섬 국제재즈페스 티벌	(사)자라섬청 소년재즈센터	2,349	900	1,449	매우우수
환경홍보 및 교류사업 녹색교육 및 환경보전 실천사업	청정가평지속가 능발전협의회	139	139	-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북한강수질개선을 위한 쓰레기 수거 및 환경캠페인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가평군지역본부	5.5	3.9	1.6	우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활동 지원	한강지킴이운동가 가평지역본부	12	12	-	우수
야생 동식물보호활동 지원	야생생물관리협회가 가평지회	10	10	-	우수
그린스타트가평네트워크 운영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55	55	-	우수
가평군농업경영인대회	가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	13	10	3	우수
친환경농업경쟁력강화사업	친환경농업인	20	10	10	매우우수
벼육묘용상토지원사업	농업인	44	22	22	매우우수
예비못자리설치지원	벼공동육묘장대표	12	12	0	매우우수
고품질육묘구입지원	농업인	420	140	280	매우우수
저소득농업인지원	저소득농업인	18	7	11	매우우수
농산물건조기지원	농업인	120	30	90	매우우수
기후변화대응농업시설지원	농업인	132	62	70	매우우수
농업인상해보험료지원	농업인	40	20	20	매우우수
농특산물저온저장고지원	농업인	100	45	55	매우우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업재해피해농업인	-	-	-	매우우수
중앙 및 도 단위 축산경진대회 참가	가평축산업협동조합	17	12	5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축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한우헬퍼사업회, 젓소헬퍼사업회	120	60	60	매우우수
축산물포장재지원	양봉연구회, 양록협회	40	20	20	매우우수
고급육미생물지원	한우연합회영농조합법인	80	40	40	매우우수
축산농가 무항생제 컨설팅지원	가평축산업협동조합	34	17	17	매우우수
우량한우생산장려지원	가평축산업협동조합	45	45		매우우수
한봉농가육성	가평군한봉연구회	10	5	5	매우우수
기후변화대응사업	축산농가	200	100	100	매우우수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축산농가	600	200	400	매우우수
가축분뇨수거료	가평축산업협동조합	150	75	75	매우우수
유해해충구제지원	축산농가	100	50	50	매우우수
노후어선엔진교체사업	어업인	50	25	25	매우우수
공동선별사업	관내 농산물 공동선별 생산자 단체	50	20	30	매우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농산물 생산자 단체	520	260	260	매우우수
고로쇠 수액 포장재 지원사업	가평군 고로쇠 연합회	50	20	30	우수
교통질서의식 함양사업	가평 모범운전자지회	16	13	3	우수
선진 교통문화 정착	가평군 녹색어머니회	2	2		우수
가평군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가평군 자율방재단	11	10	1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농업인단체 한 마당큰잔치 지원	가평군 농업인 단체협의회	54	40	14	매우 우수
분노수집운반 차량 이미지 개선 보조사업	이해준 외 2인	3.9	3.9	0	우수
방과 후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	청심공부방	10	10	-	우수
청소년 상담복 지센터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01	101	-	매우우수
맑고 깨끗한 물 전국학생 그리 기 대회	(주)경인일보	50	50	-	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변동내역
가평군새마을회관 건립	(사)가평군새마을회	새마을회관	2,182.74m ²	2014	4,800	1	4,800	가평읍 문화로154	신규취득
항사리(별말) 경로당 신축	항사리마을회	항사리(별말) 경로당	79.47m ²	2016	130	1	130	상면 별말길 44	신규취득
현2리 마을회관 신축	현2리새마을회	현2리마을회관	205.57m ²	2016	260	1	260	조종면 안곡로 1	신규취득
목동2리 마을회관 신축	목동2리새마을회	목동2리마을회관	205.57m ²	2015	260	1	260	북면 덕골로 169-10	신규취득
소법2리 마을회관 신축	소법2리새마을회	소법2리마을회관	183.16m ²	2016	280	1	280	북면 화악산로 306	신규취득
위곡2리(음동) 경로당 신축	위곡2리(음동) 경로회	위곡2리(음동) 경로당	39m ²	2016	87	1	87	설악면 셋자리길 14-35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평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경기도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체장애 인협회	1,500	목적 외 사업비 사용 후 허위정산 보고	'16.6.15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명령 (1,500)

6-6. 행사·축제경비

- ☐ 다음은 우리 가평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33,373	1,906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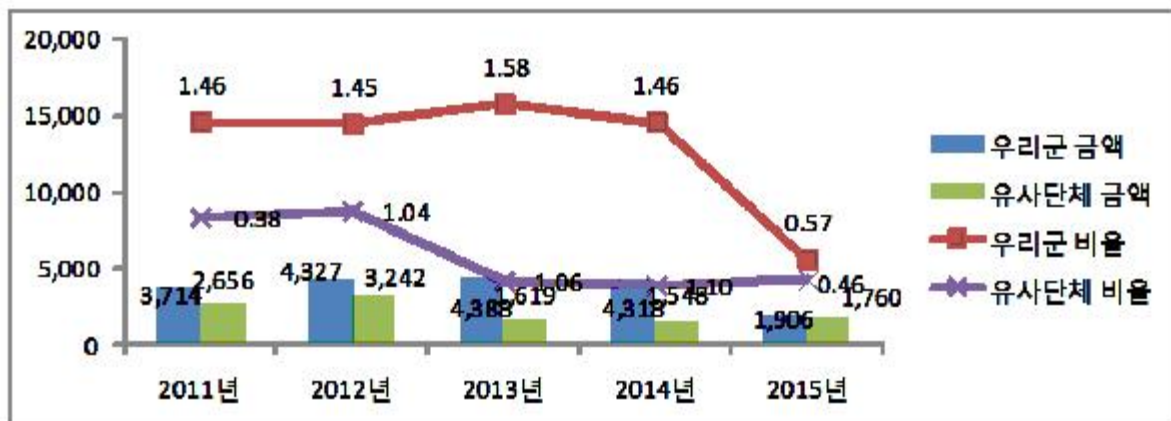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54,066	299,101	278,039	295,190	333,373
행사·축제경비	3,714	4,327	4,388	4,318	1,906
비율	1.46%	1.45%	1.58%	1.46%	0.57%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자라섬쌍쌍겨울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군의 행사·축제경비는 유사단체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금

-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가평균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종류별	구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일자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2,475	3,251	5,598	2,348	45,726	
지방채상환기금		353	207	207	0	559	2019-07-07
가평균 장학기금		9,924	1,376	1,546	170	11,300	2024-12-31
통합관리기금		20,967	1,019	2,625	1,606	21,985	2023-12-31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95	95	122	27	190	2020-11-10
문화예술발전기금		1,157	131	131	0	1,288	2018-12-31
옥외광고정비기금		29	80	80	0	109	법정기금
체육진흥기금		1,058	0	30	30	1,058	2021-10-31
사회복지기금		6,447	254	386	131	6,702	2021-09-23
식품진흥기금		155	-3	43	46	152	2020-04-30
재난관리기금		1,283	86	400	314	1,369	법정기금
농업인단체육성기금		1,007	6	29	23	1,013	2019-12-31

-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 연도별 기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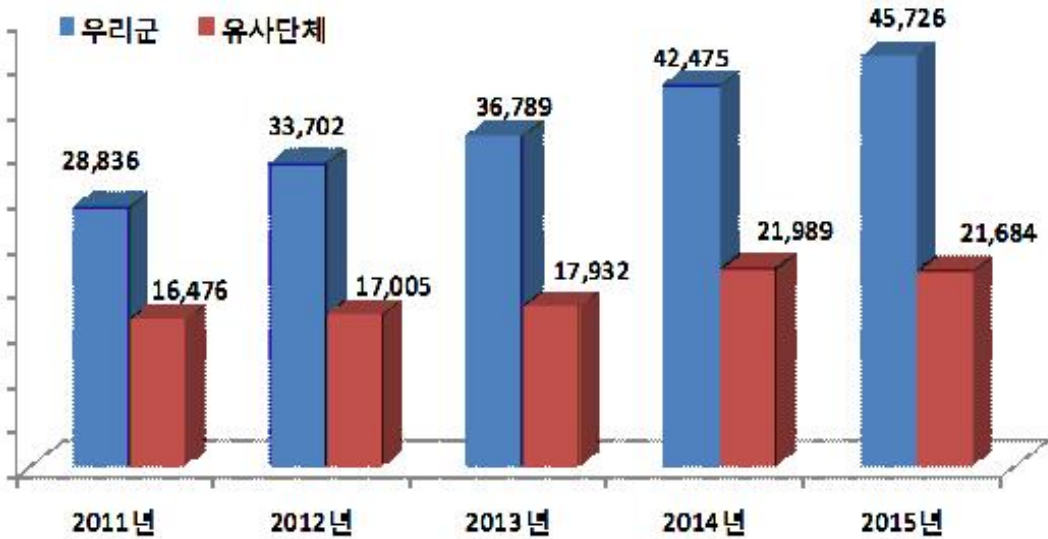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8,836	33,702	36,789	42,475	45,726

-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2010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규모가 큰 폭 증가했으며, 해마다 기금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가평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 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계			104	
분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 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가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14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9,766,513	628,352	19,491	484,258	48	2,275	9,785,956	1,110,335	
토지	10,531	295,175	436	30,279	46	2,125	10,921	323,329	
건물	253	123,269	3	2,767	1	70	255	125,966	
입목축	9,741,170	3,081	381	373	0	0	9,741,551	3,454	
공작물	6,354	202,517	18,660	450,831	0	0	25,014	653,348	
기계기구	1	15	5	5	0	0	6	20	
선박	7	838	0	0	0	0	7	838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678	2,019	6	3	0	0	4,684	2,022	
유가증권	3,512	1,058	0	0	0	0	3,512	1,058	
용익물권	3	293	0	0	1	80	2	213	
회원권	4	87	0	0	0	0	4	87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5년도는 공작물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484,258백만원의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 연말기준으로 1,110,335백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32	11,242	0	0	2	73	630	11,169	
구 매	245	4,906	0	0	2	73	243	4,833	
관리전환	-5	-186	0	0	0	0	-5	-186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392	6,522	0	0	0	0	392	6,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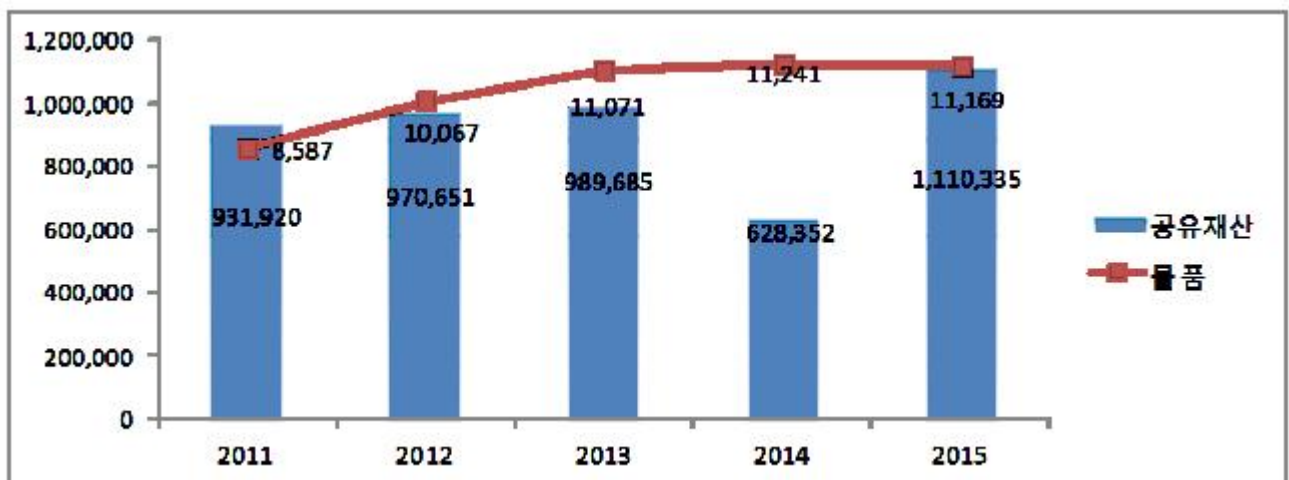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931,920	970,651	989,685	628,352	1,110,335
물 품	8,587	10,067	11,071	11,241	11,16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가평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42,665	0	0%	1,310	0.30%	
일 반 회 계	333,373	0	0%	1,310	0.39%	
특 별 회 계	87,214	0	0%	0	0%	
기 금	22,077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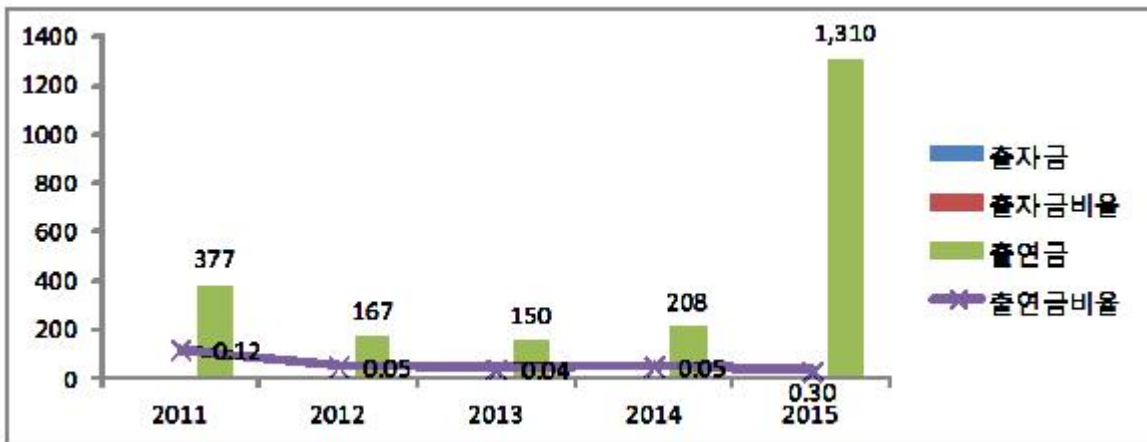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313,987	362,747	357,177	389,265	442,665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1,058	1,058	1,058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77	167	150	208	1,310
출연금 비율 (D/A)	0.12%	0.05%	0.04%	0.05%	0.3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2015년도에는 가평군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출연금이 크게 증가함.

❖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310			
	일반회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60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201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분담금
	일반회계	경기신용보증재단	80		201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6		201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5		2015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0		2015년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경기도지사	8		201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경기테크노파크	2		2015년 기술닥터사업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경기신용보증재단	50		201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2차)
	일반회계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1,050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015년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출연(지출)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 별지작성 가능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을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20	3,500	4,033	138
출자기관	소계	14	3,500	4,033
	자나라인(주)	14	3,500	4,033
출연기관	소계	6	-	-
	가평군 복지재단	6	-	-

-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출자기관이란?**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출연기관이란?**

-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7-6. 지방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가평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다)
직영	가평군상수도	34	100,431	914	6,218	10,219	△4,001	다
	가평군하수도	22	287,188	107	8,363	20,476	△12,113	라
공단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101	346	146	5,273	5,273	0	가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5회계연도 결산)

- ☞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당기순이익은 총 16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경영평가 결과는 상수도 '다', 하수도 '라', 시설관리공단 '가' 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가평군상수도	△2,416	△2,169	△4,107	△3,727	△4,001
	가평군하수도	△8,556	△9,201	△10,076	△12,839	△12,113
공단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 시설관리공단 당기순이익은 한 해 편성되는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591,640	1,707,859	116,219	2,285,928
부채 총계	20,273	19,051	-1,222	40,853
비용 총계	270,789	278,898	8,109	347,406
수익 총계	334,595	352,307	17,712	429,65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바로가기 기재](#))

●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자체 평균
I.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4. 관리채무비율			
	5. 실질채무비율(광역)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7. 통합유동부채비율			
	8. 공기업부채비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II.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11. 지방세징수율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3. 경상세외수입비율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6. 지방보조금비율			
	16-1. 지방보조금증감률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9. 인건비절감노력도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22. 행사축제경비비율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III. 책임성	24. 재정법령준수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7. 재정공시노력도			
	28. 재정분석대응도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 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함
6. 현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현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 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 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 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 가평군은 해당없음(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지 않음)

8-4.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가평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5,457	6,834	8,968	9,593	9,870
비과세	4,430	5,735	7,816	8,314	8,536
감면	1,027	1,099	1,151	1,279	1,334
지방세 징수액 (B)	38,343	39,020	37,744	41,262	44,291
비과세·감면율 (A/A+B)	12.46%	14.90%	19.20%	18.86%	18.22%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9,593	100.00%	9,870	100.00%	277	2.89%
일 반 공 공 행 정	3,167	33.01%	3,378	34.22%	211	6.66%
공공질서 및 안전	58	0.60%	64	0.65%	6	10.89%
교 육	245	2.56%	279	2.82%	34	13.69%
문 화 및 관 광	398	4.15%	429	4.35%	32	7.95%
환 경 보 호	0	0.00%	0	0.00%	0	0.00%
사 회 복 지	366	3.81%	362	3.67%	△4	△0.98%
보 건	45	0.47%	39	0.40%	△6	△12.84%
농 립 해 양 수 산	107	1.12%	100	1.01%	△7	△6.64%
산 업 · 중 소 기 업	33	0.34%	33	0.33%	0	△0.15%
수 송 및 교 통	19	0.19%	12	0.12%	△7	△36.92%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13	1.18%	132	1.34%	19	17.10%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5,024	52.38%	5,023	50.89%	△2	△0.03%
외 국	0	0.00%	0	0.00%	0	0.00%
기 타	18	0.19%	19	0.19%	0	1.83%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9,870	8,536	1,332	2	-	-
보 통 세	소 계	9,870	8,536	1,332	2	-
	취득세	-	-	-	-	-
	주민세	31	13	18	-	-
	재산세	9,534	8,490	1,042	2	-
	자동차세	305	33	271	-	-
	레저세	-	-	-	-	-
	지방소득세	-	-	-	-	-
	등록면허세	-	-	-	-	-
	지방소비세	-	-	-	-	-
	담배소비세	-	-	-	-	-
	소 계	-	-	-	-	-
목 적 세	도시계획세	-	-	-	-	-
	지방교육세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
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가평군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4,677	39,688	88.83
여성정책추진사업	10,807	7,540	69.7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848	29,359	95.17
자치단체 특화사업	3,023	2,789	92.26

-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가평균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32	2,432,574	23	2,403,588	1,895,853	9	28,986	28,986
전년도('14)	22	4,969,253	19	4,948,694	3,219,249	3	20,559	20,559
증감	10	△2,536,678	4	△2,545,106	△1,323,396	6	8,428	8,428

❖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①	사업수익 ②	순원가 ③=①-②		
1	③	가평읍 새해 해맞이 행사	2016.01.01	가평읍민의 건강과 가평읍의 번영기원	3,000	0	3,000	가평 읍	031) 580- 4011
2	②	친환경농 산물소잔 치사업	2015.01.01 ~ 2015.12.31	친환경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장터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16,000	16,000	0	농업 정책 과	031) 580- 4752
3	②	바람회, 푸드, 채즈등 판촉전	2015.01.01 ~ 2015.12.31	가평군 농특산물 홍보에 필요한 바람회, 각종 축제를 통한 직거래 장터 개설 비용 등	48,953	0	48,953	농업 정책 과	031) 580- 4752
4	⑤	자라섬 국제채즈 페스티벌	2015.10.09 ~ 2015.10.11	국내외 정상급 채즈 아티스트 공연, 각종 체험 이벤트 등	900,000	456,257	443,743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5	③	가평 자라섬 전국마라 톤대회	2015.09.20 ~ 2015.09.20	제8회 가평자라섬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70,000	0	70,000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6	③	가평군수 배(기)	2015.04.25 ~ 2015.11.01	가평군수배(기) 종목별 생활체육대 회 개최	60,972	0	60,972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7	③	유소년 축구대회	2015.04.11 ~ 2015.10.25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119,668	0	119,668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8	④	석봉 한호선생 전국 회호대회	2015.10.03	석봉 한호선생 전국 회호대회	29,607	0	29,607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9	③	대통령기 가평투어 전국도로사 사이클대 회	2015.03.24 ~ 2015.03.27	대통령기 전국도로사 이클대회 개최	80,000	0	80,000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10	③	연인산 산악자전 거 대회	2015.05.31	연인산 전국산악자 전거대회 개최	40,000	0	40,000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1	③	청정 가평 전국합기도 선수권 대회	2015.04.11 ~ 2015.04.12	전국 합기도 대회	30,000	0	30,000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12	③	가평군체 육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	2015.09.14	초중고 고등학생 축구대회	15,000	0	15,000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13	③	어설픈 연극제	2015.10.03 ~ 2015.10.04	거대인형 퍼레이드	242,102	29,779	212,324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14	③	찾아가는 문화활동	2015.01.01 ~ 2015.12.31	다양한 문화체험	183,556	0	183,556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15	③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티볼대회	2015.10.30 ~ 2015.11.01	전국학교스포 츠클럽 티볼대회	15,000	0	15,000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16	③	양준혁 전국초등 학교 야구대회	2015.11.05 ~ 2015.11.09	양준혁 전국초등학 교 야구대회	30,000	0	30,000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17	③	경기도학 생테니스 대회 개최	2015.04.07 ~ 2015.04.12	경기도학생 테니스대회 개최	10,000	0	10,000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18	⑥	경기도 회장기 검도대회	2015.10.30 ~ 2015.11.01	경기도회장 기 검도대회 개최	20,000	0	20,000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19	③	거리로 나온 예술	2015.01.01 ~ 2015.12.31	자생적 예술인 단체의 활동 공간 마련	19,000	5,700	13,300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20	⑥	전국대학 스포츠동 아리대회	2015.09.19 ~ 2015.11.23	전국대학스 포츠동아리 대회 개최	49,997	0	49,997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21	③	문화예술 기획공연 지원	2015.01.01 ~ 2015.12.31	지역 예술인의 참여 기회 확대	270,000	0	270,000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22	⑥	자라섬 거리 음악제	2015.05.02 ~ 2015.10.03	자라섬, 가평역, 청평역 버스킹 공연	29,996	0	29,996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23	⑥	자라섬 음악 콩쿨대회	2015.05.23 ~ 2015.09.12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	99,714	0	99,714	문화 체육 과	031) 580- 2064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①	사업수익 ②	순원가 ③=①- ②		
24	③	가평야생 화연구회 작품 전시회	2015.05.01 ~ 2015.10.04	야생화 홍보로 우리꽃의 소중함을 일깨워줌	8,000	0	8,000	소득 개발 과	031) 580- 2884
25	②	자매도시 초청행사	2015.11.14 ~ 2015.11.15	자매도시 초청행사	24,023	0	24,023	자치 행정 과	031) 580- 2112
26	③	새해신년 인사회	2015.01.05	올미년 새해인사회 개최	3,000	0	3,000	자치 행정 과	031) 580- 2112

-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첨 파일 참고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첨 파일 참고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가평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5년 준공된 사업

※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8-8. 수의계약 현황

☐ 우리 가평균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84	72,023	108	1,722	13.78%	2.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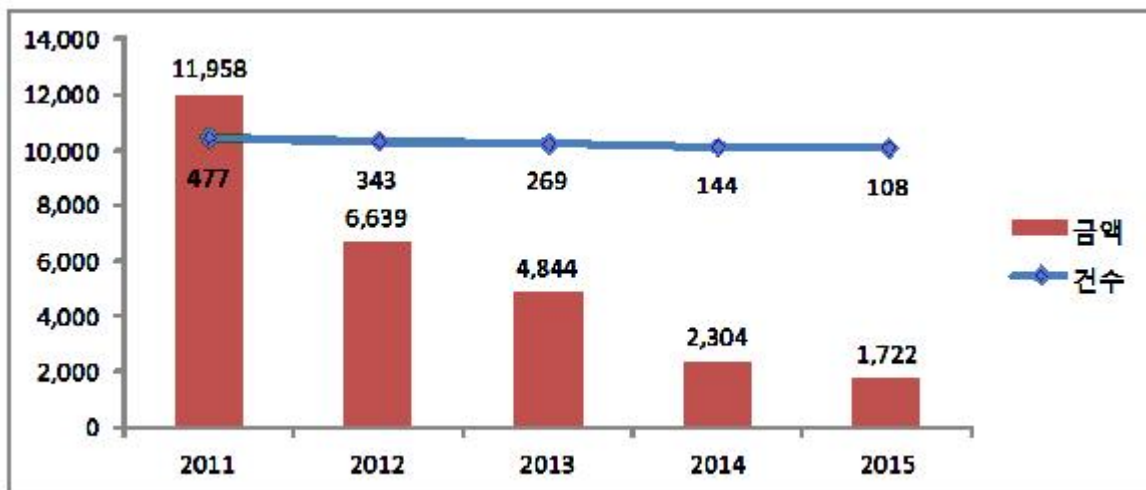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적	건수	477	343	269	144	108
	금액	11,958	6,639	4,844	2,304	1,72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명(A)	시설유형(B)	시설구분(C)	시설명(D)	건립일(E)	운영방식(F)	건물면적(m ²)(G)	토지면적(m ²)(H)	관리인력(I)	연간이용인원(J)	건립비용(K)	운영비용(L)	운영수익(M)	순수익(N)
가평균	문화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98.7.1	위탁	1,843 m ²	5,153 m ²	2명(비공무원)	50,000명	10,978	188,344	45,772	-142,572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시설유형 : 문화·체육·복지·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 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 완료	진행중	
					해당	없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8-12. 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가평균의 지방세 징수액은 44,29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39,020	37,744	41,262	44,291	100	4.3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주민세	444	480	735	768	1.73	20.04
재산세	17,452	18,391	19,911	20,742	46.83	5.93
자동차세	7,729	6,485	7,662	7,192	16.24	-2.37
레저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715	5,444	5,967	6,478	14.63	4.27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6,521	5,667	5,374	7,742	17.48	5.89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158	1,278	1,612	1,369	3.09	5.74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5) 금액 / 최초연도(ex:2012) 금액) ^ (1/3) - 1

- 가평균의 지방세 징수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최근 평균 증가율 4.31%) 특히 주민세의 징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45,900	135,200	162,000	65.88	119.82

8-14. 감사결과

- 우리 가평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기도	2015.12.16.	노인복지관 특정감사 (보조금 집행실태 등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 행정상 조치 - 총 11건(시정 9, 주의 2) ○ 재정상조치 : 24,153,630원 - 지급 : 4,516,040원 - 환수 : 11,146,590원 - 세입 : 8,491,000원	처분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해당 감사기관 URL 주소)

※ '15 ~ '16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5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2015회계연도에 가평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수입장수 태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징수	감액 10백만원

-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가평군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5,920	0	0	5,920	2018	2015	3%
하수도사업소 진입로 (가평도시계획도로 3-11호선) 개설공사	3,000	-	-	3,000	2017	2015	3%
산장관광지 개선사업	2,000	-	-	2,000	2018	2015	10%
가평 뮤직빌리지 조성사업	27,300	-	17,300	10,000	2018	2015	25%
야구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	8,200	1,900	3,017	3,283	-	-	-
희망복지센터 신축	1,600	-	-	1,600	2017	2015	0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사업	3,970	-	430	3,540	2017	2015	5%
청평도시계획도로(중로 1-4호선) 개설공사	9,500	-	2,000	7,500	2018	2015	20%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1단계)	25,000	-	-	25,000	2020	2015	5%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1단계)	24,200	-	-	24,200	2020	2015	5%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1단계)	24,200	-	-	24,200	2020	2015	5%
설악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공사	5,600	-	-	5,600	2018	2015	10%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 3-14호선 외 1개 개설공사	2,200	300	-	1,900	2017	2015	3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회,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하수도사업소 박민호(8580-4463)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분뇨 유입량이 감소하고, 가축분뇨 유입량이 증대하여 처리용량을 변경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 도모

사업개요

- 기간 : 2016 ~ 2018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조종내길 57
- 규모 : 가축분뇨 처리용량 증설(20m³/일 → 95m³/일)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920백만원(국비 4,736 군비 474 기금 710)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5,920	0	0	375	5,545
국비	4,736	0	0	300	4,436
시도비	0	0	0	0	0
시군구비	474	0	0	30	444
지방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타	710	0	0	45	665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

- 2016. 03. 02 :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 2016. 04. 2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통합발주 심의

향후계획

- 2016. 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7. 1. : 설계 검토 및 재원 협의
- 2018. 9. : 사업 준공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하수도사업소 진입로(가평도시계획도로 3-11호선) 개설공사	담당자	하수도사업소 김인호 (☎580-445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춘선 복선전철의 개통에 따른 가평읍 달전리 일원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및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재산권 제한에 따른 장기적인 민원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17년 12월 (24개월)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달전리 오목교 입구 ~ 가평공공하수처리장 일원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407m, B=12m ~ 15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000			1,000	2,0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000			1,000	2,0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

- 2015. 09. 14 :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10. 30 : 행정협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지

향후계획

- 2016. 01 ~ 1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
- 2017. 01. : 사업계약 및 착공
- 2017. 12. : 사업준공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산장관광지 개선사업	담당자	관광사업단 김양섭(☎580-2516)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장관광지의 노후된 진입교량(1986년도 설치)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생태, 전원휴양관광지, 수도권 유일의 청정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함
- ※ 교량 정밀점검 기술용역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2013. 6월)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2018. 12.
- 위 치 : 가평읍 상면 덕현리 산74-12번지 일원(산장관광지)
- 규 모 : 산장1교 재가설 : L=112m, B=10.5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000			200	1,800
국 비	1,000			100	900
시 도 비					
시군구비	1,000			100	900
지 방 채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2. 2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6. 6. 2.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17. 6월
- 공사 준공 : 2018. 12월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총사업기간 변경 (당초 ; 2016. 1. ~ 2017. 12. 변경 2016. 1. ~ 2018. 12.)
- 국비 확보 난항으로 2017년도 사업비 전체분 미확보(7,200백만원 확보)

사업명	가평 뮤직빌리지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사업단 이진어(☎580-4631)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평역 폐선부지를 활용한 뮤직빌리지를 조성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악도시 가평으로서 문화복합거점 마련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 2018. 6
- 위 치 : 가평읍 대곡리 148-3일원(구 가평역사 일원)
- 규 모 : 뮤직(공연장, 영화관 등), 플라자, 숙박, 상업 zone 구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7,300		13,992	7,000	3,000
국 비					
시 도 비(시책)	10,000		7,010		
시군구비	9,300		6,982	2,000	
지 방 채	8,000			5,000	3,00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5%)

-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대상 수상 : 2014. 12. 29.
- 중앙투자심사 승인 : 2015. 2. 13.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 : 2015. 04. 22.
-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6. 01. 15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 2016. 01. 27
- 가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6. 05. 31.
- 실시설계 완료 : 2016. 7월

향후계획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6. 8월
- 공고 및 사업발주 : 2016. 9월
- 준공 : 2018. 6월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총사업비 변경 (당초 23,000백만원, 변경 27,300백만원)
- 주민의견 수렴 등 계획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사업명	야구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체육과 신윤성(☎580-2510)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들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생활체육공간 조성으로 대도시 체육시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

사업개요

- 기 간 : 2013. 7. ~ 2016. 12.
- 위 치 : 가평읍 대곡리 산14번지 일원
- 규 모 : 야구장 1면, 국궁장 4과녁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4,812		2,027	2,785	
시군구비	3,388	1,900	990	49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15. 11. 20. : 공사 착공
- 2016. 01. 26.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향후계획

○ 2016. 12월 : 공사 준공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사업명	희망복지센터 신축	담당자	희망복지실 조정임(☎580-2210)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성 시기별로 체계 없이 분산되어 있는 복지센터를 통합 배치하여 복지 허브공간을 조성, 지역주민의 서비스 이용편의 도모하고자 희망복지센터건립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8
- 위 치 : 가평읍 읍내리 608-5 외 2필지
- 규 모 : 아하카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무한돌봄센터, 드림스타트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희망복지실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600			1,000	600
국 비					
시 도 비	1,000			1,000	
시군구비	600				6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경제과 복합시설물 및 따복하우스 건립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

향후계획

- 2016. 6월 : 타당성조사
- 2016. 12월 : 민간사업자 선정
- 2017. 7월 : 공사착공
- 2018. 12월 : 준공

사업변경 내역

- 단독건물 신축 → 복합시설물 및 따복하우스 건립
 - 사업위치 : 대곡리 316 → 읍내리 608-5 외 2필지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1,600백만원

사업명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사업	담당자	희망복지실 남궁광(☎580-2233)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장래 공설묘지 수급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

사업개요

- 기간 : 2015 ~ 2017
- 위치 : 가평군 읍내리 산125번지 일원
- 규모 : 15,670㎡(자연장지, 봉안시설, 녹지, 편의시설 진입도로 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970		430	1,715	1,825
국비	1,000			500	500
시도비	214			32	182
시군구비	2,750		430	1,183	1,143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6.03.21 : 2017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예산 신청
- 2016.04.01 : 무연분묘(22기) 이장 완료
- 2016.05.09 : 군관리계획(공동묘지, 자연장지, 도로) 변경결정 입안서 제출
- 2016.06.10 : 유연분묘(33기) 이장용역 착수

향후계획

- 2016.07 ~계속 : 분묘 이전 및 편입토지 보상 추진
- 2016.09 :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 완료
- 2016.09 : 편입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6.10~ 2017. 12 : 공사착수 및 준공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1-4호선)	담당자	도시과 전형준(☎580-2371)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평역 북선전철의 개통에 따른 신역사~시가지간 효율적 교통체계 개선 및 북한강 자전거도로 연결에 따른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8
- 위 치 : 청평면 청평리 청평역 ~ 청평교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L=850m, B=20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9,500	-	2,000	1,000	6,5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8,500	-	1,000	1,000	6,5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특별조정교부금	1,000	-	1,0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5. 05. ~ 2015. 12. : 실시설계 용역
- 2016. 01. ~ 2017. 03. : 편입토지 및 물건 보상 협의

향후계획

- 2017. 04. ~ 2018.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1단계)	담당자	도시과 박정일(☎580-2462)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 자력개발 방식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절차가 완료('15. 07.)되었으나 기반시설이 미 조성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천지구에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지역발전 및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20년 12월
- 위 치 :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일원 (가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도로 5개소(연장 : 1,053m), 주차장 1개소(면적 : 5,54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5,000	0	0	5,000	20,0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5,000	-	-	3,000	12,000
지 방 채	10,000	-	-	2,000	8,000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2. 03. : 가평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변경) 고시
- 2015. 07. : 가평역세권(가평, 청평, 상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 2015. 08. : 가평역세권(가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 2015. 10. : 2015년 제7회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
- 2016. 02. : 실시설계 용역 착수(1차분)

□ 향후계획

- 2016. 08. : 지역상생기금 차입(10억원)
- 2016. 08. : 실시계획 인가
- 2016. 09. : 토지보상 공고 및 보상협의를
- 2016. 10. :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10억원)
- 2016. 11. : 착공
- 2017. 02. : 통합발전기금 차입(20억원)

□ 사업변경 내역

- 재원조달계획 변경[전액 군비 → 지방채 발행(100억원)]

사업명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1단계)	담당자	도시과 박정일(☎580-2462)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 자력개발 방식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절차가 완료('15. 07.)되었으나 기반시설이 미 조성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천지구에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지역발전 및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20년 12월
- 위 치 :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일원 (청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도로 15개소(연장 : 2,060m), 주차장 2개소(면적 : 2,950㎡), 광장 1개소(면적 : 626㎡), 공원 1개소(면적 : 1,08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4,200	0	0	4,900	19,3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4,700	-	-	3,400	11,300
지 방 채	9,500	-	-	1,500	8,000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1. 10. : 청평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변경) 고시
- 2015. 07. : 가평역세권(가평, 청평, 상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 2015. 10. : 2015년 제7회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
- 2016. 02. : 실시설계 용역 착수(1차분)

□ 향후계획

- 2016. 08. : 지역상생기금 차입(5억원)
- 2016. 08. : 실시계획 인가
- 2016. 09. : 토지보상 공고 및 보상협의
- 2016. 10. :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10억원)
- 2016. 11. : 착공
- 2017. 02. : 통합발전기금 차입(20억원)

□ 사업변경 내역

- 재원조달계획 변경[전액 군비 → 지방채 발행(95억원)]

사업명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1단계)	담당자	도시과 박정일(☎580-2462)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 자력개발 방식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절차가 완료('15. 07.)되었으나 기반시설이 미 조성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천지구에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지역발전 및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20년 12월
- 위 치 :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일원 (상천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도로 8개소(연장 : 1,829m), 주차장 2개소(면적 : 11,045㎡), 광장 1개소(면적 : 9,83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4,200	0	0	5,000	19,2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4,700	-	-	3,500	11,200
지 방 채	9,500	-	-	1,500	8,000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1. 08. : 상천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변경) 고시
- 2015. 07. : 가평역세권(가평, 청평, 상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 2015. 10. : 2015년 제7회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
- 2016. 02. : 실시설계 용역 착수(1차분)

□ 향후계획

- 2016. 08. : 지역상생기금 차입(5억원)
- 2016. 08. : 실시계획 인가
- 2016. 09. : 토지보상 공고 및 보상협의
- 2016. 10. :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10억원)
- 2016. 11. : 착공
- 2017. 02. : 통합발전기금 차입(20억원)

□ 사업변경 내역

- 재원조달계획 변경[전액 군비 → 지방채 발행(95억원)]

사업명	설악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2-2호선)	담당자	도시과 한인섭(☎580-237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설악시가지간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변 상권 경제 활성화에 도모.

사업개요

- 기 간 : 2016 ~ 2018
- 위 치 : 설악면 신천리 버스터미널 ~ 신치리 367-4번지 일원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L=602m, B=15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5,600	-	-	100	5,5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5,600	-	-	100	5,5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특별조정교부금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6. 01. ~ 2016. 12. : 실시설계 용역

향후계획

- 2017. 01. ~ 2017. 12. : 편입토지 및 물건 보상 협의
- 2017. 04. ~ 2018.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3-14호선외1)	담당자	도시과 전형준(☎580-2371)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체계 개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재산권 제한에 따른 장기적인 민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7
- 위 치 : 청평면 청평리 안전유원지 일원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L=173m, B=6~12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200	300	-	500	1,4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200	300	-	500	1,4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특별조정교부금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4. 07. ~ 2014. 12. : 실시설계 용역
- 2015. 01. ~ 2017. 03. : 편입토지 및 물건 보상 협의

향후계획

- 2017. 04. ~ 2017.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p><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및 필요성</p> <p>○</p> <p><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p> <p>○ 기간 :</p> <p>○ 위치 :</p> <p>○ 규모 :</p> <p><input type="checkbox"/>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p> <p>○ 총사업비 : 백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계</th> <th colspan="2">집행액</th> <th colspan="2">향후 소요액</th> </tr> <tr> <th>기투자</th> <th>2015년</th> <th>2016년</th> <th>2017년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국 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 도 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군구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 방 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민간자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 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p> <p>○</p> <p>○</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p> <p>○</p> <p><input type="checkbox"/> 사업변경 내역(해당시)</p> <p>○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p>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9-2. 지방채 발행사업

☐ 우리 가평군에서 '15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이하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5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9-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해당없음

9-3. 민간투자사업

☐ 우리 가평군에서 '15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4년까지 부담액	'15년 부담액	'16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이하	해당	없음			
BTO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5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6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재정부담액이 큰 사업 위주로 재정부담이 큰 사유를 설명

9-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해당없음

특 수 공 시

대상사업

연번	사업명	제출부서	비고
1	도시가스 공급사업	경제과	
2	가평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문화체육관광과	
3	가평야구장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과	
4	가평도시계획도로(대로3-2호선)개설	도시과	
5	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개설	도시과	
6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3단계)	하수도사업소	
7	가평군립 중앙도서관 건립	평생교육사업소	

도시가스 공급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위 치 : 가평군 일원
(청평검문소~조종면 현리, 읍내리, 달전리, 하천리, 대성리)
- 사업내용 :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매설, 지역정압기 설치
- 사업량 : L=14.57km
- 사업비 : 3,569백만원(군비 1,455, 기금 1,180, 민자 934)

□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불균형 적극 해소
-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생활 편리 도모 및 환경개선
-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공급으로 생활 경제비용 감소

□ 사업 진행 현황

- 사업확정 : 2016. 1월
- 공사착공 : 2016. 2월
- 공사준공 : 2016. 12월

담당부서 : 경제과 경제정책팀 김성훈 ☎ 031-580-2271

가평다목적체육관신축공사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 2015.
- 위 치 :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18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수영장(25mx6레인),배드민턴코트(12면),헬스장
- 사업 량 : 부지면적 A=62,903m², 건축연면적=7,880.95m²
- 사업 비 : 17,966백만원

□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체육공간 조성
- 지역주민 체육활동 증진
- 여가선용의 장 마련

□ 사업 진행 현황

- 2011. 6월 : 실시설계
- 2011. 7월 : 계약심사
- 2011. 12월 :공사착공
- 2015. 12월 공사준공

가평야구장조성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6.
- 위 치 :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산1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야구장 1면(정규격), 국궁장 4과녁
- 사업량 : 부지면적 A=28,828㎡(과녁)
- 사업비 : 8,200백만원

□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쾌적한 체육활동여건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주민들의 휴식, 문화,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주민화합과 복지증진

□ 사업 진행 현황

- 2013. 10월 : 군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4. 8월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14. 11월 : 가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4. 12월 : 실시계획인가 고시(가평군고시 제2014.203호)
- 2015. 7월 :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완료
- 2015. 8월 : 경기도 계약심사 신청
- 2015. 9월 : 공사착공
- 2016. 12월 : 공사준공

가평도시계획도로(대로3-2호선)개설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19
- 위 치 :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손짜장 ~ 남이섬) 일원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 사업량 : L=1.33km, B=25m
- 사업비 : 37,000백만원

□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신역사 일원의 기반시설 확보 및 교통체증 완화
- 기존 시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주민 통행불편 가중
-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 신역세권 일원 기반시설 확보로 철도이용 편리 도모

□ 사업 진행 현황

- 실시설계 : 2011. 1월 ~ 2015. 12월
- 국도협약 : 2012. 11월
- 공사착공(1공구) : 2011. 6월
- 공사준공(1공구) : 2015. 6월
- 공사착공(2공구) : 2015. 6월
- 공사준공(2공구) : 2017. 12월
- 공사착공(3공구) : 2018. 6월
- 공사준공(3공구) : 2019. 12월

담당부서 : 도 시 과 도시개발팀 한인섭 ☎ 031-580-2372

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 외 1)개설공사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 2017
- 위 치 :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종합운동장 사거리 ~ 읍내리 가평천 제방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 사업량 : L=0.59km, B=20m
- 사업비 : 12,000백만원

□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가평 시가지내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각종 재난-재해시 구호 통로 확보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 진행 현황

- 실시설계 : 2013. 03월
- 토지보상 : 2013. 07월 ~ 현재
- 실시계획인가 : 2014. 01월
- 설계용역 및 경기도 계약심사완료 : 2014. 05월
- 공사착공 : 2016. 03월
- 공사준공 : 2017. 12월

담당부서 : 도 시 과 도시개발팀 한인섭 ☎ 031-580-2372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3단계)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5
- 위 치 : 가평군 일원(두밀리, 행현리, 임초리, 태봉리, 대보리 일원)
- 사업내용 : 하수관로정비
- 사업량 : L = 36.2km, 배수설비 954개소
- 사업비 : 19,227백만원

□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처리구역 확대와 노후 하수관로정비를 통해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 향상
- 선진화 된 하수관로 사업 도입과 하수분야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하수도 보급을 통한 주민복지증진과 팔당수계 수질 보전

□ 사업 진행 현황

- 3단계 추진방침 결정(환경부) : 2010. 05. 03
- 입찰방법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 : 2010. 08. 13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 2011. 06. 14
- 공사착공 : 2011. 12. 19(적격자 선정 : 2011. 11 .21)
- 성능보증시험 : 2015. 05 ~ 06.
- 공사준공 : 2015. 05. 30.
- 시설물 인수·인계 : 2015. 12. 31. (한국환경공단 → 가평군)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8
- 위 치 :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79-1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중앙도서관 건립
- 사업량 : 도서관 건립 (지하1층, 지상3층/면적 3,580㎡/부지 8,720㎡)
- 사업비 : 13,350백만원

□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중앙도서관이 1985년 개관하여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가평군민의 정보·문화·평생교육을 담당할 현대적인 중앙도서관 신축 절실
- 각 면에 있는 공공도서관 및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총괄하고 가평군의 대표적인 문화 복지 및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하고자 함

□ 사업 진행 현황

- 가평중앙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읍내리 366번지 일원) : '13. 3월
- 가평중앙도서관 건립계획 변경 수립 (읍내리 579-12번지 일원) : '13. 5월
- 중앙도서관 건립부지 최종 결정(읍내리 579-15번지 일원) : '15. 1월
- 중앙도서관 건립부지 변경계획 수립 : '15. 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 '15. 4월
- 실시설계용역 준공(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 '16. 8월한
- 공사계약 및 착공 : '16. 9월한
- 공사준공 : '17. 12월한
- 도서관개관 : '18. 6월한

용어 해설

- 색인 및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124

색 인

- 가용재원 (可用財源)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 결산 (決算)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 공유재산 (公有財產)
- 국고보조 (國庫補助)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 국세 (國稅)
- 금고 (金庫)
- 기금 (基金)
- 기본경비 (基本經費)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 목적세 (目的稅)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 보증채무부담행위 (保證債務負擔行爲)
- 보통세 (普通稅)
- 부담금 (負擔金)
- 부채 (負債)
- 불용액 (不用額)
- 비용 (費用)
- 사고이월 (事故移越)
- 사업예산제도 (事業豫算制度)
- 성과주의 예산제도 (成果主義 豫算制度)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 수익 (收益)
-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 세외수입 (稅外收入)
- 세입 (歲入)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 세출 (歲出)
- 수의계약 (隨意契約)
- 순계예산 (純計豫算)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 예비비 (豫備費)
- 예산 (豫算, budget)
- 예산과목 (豫算科目)
-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
- 여성정책추진사업 (女性政策推進事業)
- 인건비 (人件費)
- 예산대비 채무비율 (豫算對比 債務比率)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 의존수입 (依存收入)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 일반회계 (一般會計)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 잉여금 (剩餘金)
- 자본지출 (資本支出)
- 자산 (資產)
- 자체수입 (自體收入)
-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 재정분석 (財政分析)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 재정진단 (財政診斷)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 지방세 (地方稅)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 채권 (債權)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 총계예산 (總計豫算)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 출연금 (出捐金)
- 출자금 (出資金)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통합재정수지 (統合財政收支)
-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 특별회계 (特別會計)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 회계 (會計)
- 회계연도 (會計年度)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 Transfer - 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이는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총당금, 카드결제에 의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불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text{불용액} = \text{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text{당해연도 지출액} - \text{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과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 (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 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용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 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 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여성정책추진사업 (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증진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 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text{예산대비 채무비율} = \text{지방채무 총규모} / \text{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text{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text{지방채무 잔액} + \text{채무부담행위 잔액} + \text{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text{예산규모} = \text{일반회계} + \text{기타특별회계} + \text{공기업특별회계}$$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 (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 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 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 (資產)

지방자치단체 복식부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text{재정자립도} = \text{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가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 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시·군·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 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용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채무상환비율} = \frac{\text{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text{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times 100$$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부동산교부세

●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지출원의 정산지출 ii)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iii)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출연금 (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 (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 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 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투자사업 심사(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